

# 한·일 양국의 독도/竹島 고유영토론의 쟁점\*

박 병 섭\*\*

## 〈목 차〉

- |                        |                        |
|------------------------|------------------------|
| 1. 머리말                 | 6. 대한제국의 독도에 대한 영유 의사  |
| 2. 고유영토론의 일반적인 문제점과 정의 | 7. 일본정부의 '竹島(독도)고유영토론' |
| 3. 「한국정부건해」의 문제점       | 8. 외무성의 『10포인트』에 대한 분석 |
| 4. 조선 정부의 독도에 대한 영유 의사 | 9. 맺음말                 |
| 5. 조선 사서에 대한 비판        |                        |

## 〈국문초록〉

고유영토라는 말은 위험한 정치 용어이므로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독도를 둘러싸고 대립하는 한·일 양국에서는 모호한 고유영토라는 말을 학문적으로 잘 정의하고 올바르게 쓸 필요가 있다. 본고는 고유영토라는 말의 용법이나 의미를 분석하고 그 정의를 시도한다. 또한 그 정의에 따라 한·일 양국의 고유영토의 주장을 분석한다.

한국 정부가 독도를 고유영토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외교부 팸플릿 『한국의 아름다운 섬, 독도』 및 1950년대에 일본 정부로 보낸 「한국정부건해」에서 제시되었다. 이들을 검증하면 17세기 이전 사료들은 우산도의 위치가 모호하거나 『태종실록』처럼 우산도와 울릉도를 혼동하는 등 고유영토의 근거가 충분치 않다. 그 근거로써 평가할 수 있는 사료는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6S1A5B8A02929224). 본고는 2018년 6월 15일 경북대학교에서 열린 학술대회 '독도 영유권의 융복합연구와 향후 방향'(경북대 울릉도·독도 연구소, 영남대 독도연구소 공동주최)에서 발표한 논문 『독도/죽도 고유영토론의 쟁점』을 수정한 것임.

\*\* 일본 竹島=독도연구넷 / spm07550@daum.net

18세기에 작성된 관찬서 『춘관지』나 『동국문헌비고』 등이다. 이들 사료는 17세기 말 독도를 실견한 위에 조선땅인 우산도(자산도)는 일본이 말하는 마쓰시마(松島)라고 주장한 안용복의 증언을 수용하고, 독도에 대한 영유 의사를 기록하고 있다. 안용복의 영토 인식의 정당함은 일본의 공식 문서 『겐로쿠 각서(元祿覺書)』 등에서도 확인된다.

그러나 우산도의 위치에 관한 정보가 전해지지 않았으므로 그 소재가 모호하게 되고, 19세기 말 울릉도 검찰사나 주민들은 우산도의 위치를 몰랐으며, 우산도는 전설의 섬으로 되어버렸다. 한편 19세기 중엽 울릉도로 들어간 전라도 어민들은 울릉도 동쪽에 바위섬을 발견하고, 이를 ‘돌섬’이나 ‘독섬’으로 부르고 때로는 강치잡이를 하였다. 이 섬이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 ‘石島’ 표기로 기록되었다. 이 표기는 ‘獨島’로 변했으며, 대한제국이 獨島에 영유 의사를 가진 것은 ‘심흥택 보고서’ 등에서 분명하다.

한편 일본이 독도를 고유영토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외무성 팸플릿 『다케시마 문제 10의 포인트』에는 없으며, 1953-1962년에 한국 정부로 보낸 「일본정부견해」 만에 제시되었다. 이 견해서는 고유영토의 근거로서 12개 사료를 제시했으나 이 중에 일본이 마쓰시마(松島, 독도)에 영유 의사를 가진다는 것을 드러내는 사료는 하나도 없다. 이는 앞의 외무성 팸플릿이 12개 사료를 하나도 인용하지 않았던 사실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결국 1905년 이전 조선·대한제국 정부만이 독도에 대해 영유 의사를 가졌으므로 독도는 한국의 고유영토라고 주장할 수 있다.

**주제어:** 울릉도, 石島, 돌섬, 독섬, 다케시마, 마쓰시마

## 1. 머리말

한·일 양국 정부는 각각 독도를 자국의 고유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분명히 적어도 어느 한쪽의 주장은 틀렸다. 일본이 먼저 사용하기 시작한 고유영토론은 선정(煽情)적인 정치 용어이며, 때로는 양국 간 우호를 순식간에 날려버릴 수 있는 다이내마이트 같은 존재이다. 이런 정치 용어의 사용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일본 정부는 초·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도 竹島[독도] 등을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가르칠 것을 「학습지도요령」에서 의무화했다. 이런 일본의 움직임은 비롯해 한·일 양국 간 고유영토론의 충돌은 격화될 수밖에 없으며, 이제 이런 흐름을 막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한국에서는 일본의 竹島[독도] 고유영토론을 비판하는 글은 많이 있으나,<sup>1)</sup> 모호한 고유영토라는 말을 아무 정의도 없이 사용하고 일본의 주장을 비판하고 있다. 그렇다면 후술하는 바와 같이 시모조 마사오(下條正男)처럼 독자적으로 고유영토를 정의한 자에 대해서는 고유영토의 비판이 빗나갈 수도 있다. 그래서 본고는 고유영토의 의미나 용법을 분석한 다음 고유영토의 정의를 시도한다. 이 정의에 따라 한·일 양국 정부의 고유영토론을 분석한다.

한국 정부의 고유영토론은 외교부의 팸플릿 『한국의 아름다운 섬, 독도』에 제시되어 있다. 외교부는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입니다”(4쪽)라고 기술한다. 지리적으로 고유영토라는 것은 듣기 드문 말인데 이에 관련된 설명을 보면, “독도에서 가장 가까운 우리나라 울릉도(독도로부터 87.4km)에서는 맑은 날이면 육안으로 독도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하여 독도는 역사적으로 울릉도의 일부로 인식되어 왔습니다”(5쪽)라고 기술한다. 지리적인 고유영토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울릉도의 일부로서 시각적으로도 인식되어 왔음을 강조한 것 같으며 학문적으로 특별한 의미는 없는 것 같다.

다음 국제법적으로 고유영토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는 관련된 설명이 없지만, 일반적으로 국제법에서 영역 권원(權原)의 하나로 역사적 권원이라는 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국제법적인 고유영토에 해당할 것이다. 그렇다면 국제법적인 고유영토도, 역사적인 고유영토도 의미는 거의 다르지 않다. 팸플릿은 역사적인 고유영토에 관해서는 “우리나라가 독도를

1) 서인원, 「1950년대 일본 고유영토설의 정치적 분쟁화 모순점에 대한 고찰」, 『영토해양연구』 15호, 2018, 6-47쪽; 박진오, 「일본의 독도 고유영토, 무주지선점, 그리고 국제법적주장의 허구와 한계」, 『일본문화학보』 62호, 2014, 161-176쪽; 송휘영, 「『죽도문제 100문 100답』의 「죽도도해금지령」과 「태정관지령」 비판: 일본의 ‘고유영토론’은 성립하는가?」, 『독도연구』 16호, 2014, 209-240쪽; 송휘영, 「독도에 대한 일본의 「고유영토론」과 독도 인식」, 『한국동양정치사상연구』 제17권 2호, 2018, 167-198쪽; 김호동, 「일본의 독도 ‘고유영토설’ 비판」, 『민족문화논총』 49호, 2011, 329-356쪽.

우리 영토로 인식하고 통치해온 역사적 사실은 우리의 관찬문헌이 기록하고 있습니다”라고 쓰고 구체적인 문헌으로 『세종실록(世宗實錄)』 등을 거론한다. 또한 독도의 통치는 신라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한다. 본고는 이런 견해나, 일찍이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와 <표 1>과 같이 별인 독도 영유권 논쟁에서 주장한 「한국정부견해」<sup>2)</sup> 등을 분석한다.

한편, 일본 정부는 팸플릿 『다케시마 문제 10의 포인트』(『10포인트』로 약칭)에서 “竹島[독도]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또한 국제법상으로도 분명히 일본국 고유의 영토입니다”(2쪽)라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에도(江戸)시대에 “오키(隱岐)에서 울릉도에 이르는 길에 위치한 竹島[독도]는 항행의 목표지점으로서, 배의 중간 정박지로서 또한 강치나 전복 잡이의 장소로 자연스럽게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리하여 일본은 늦어도 에도시대 초기에 해당하는 17세기 중엽에는 竹島[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확립하였습니다”(8쪽)라는 것이다.

그러나 단지 자연히 이용되었던 것에 불과한 독도, 또한 18세기 이후는 자연히 이용되지 않았던 독도에 대해 왜 일본이 ‘영유권’을 확립했다고 말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아무 설명도 없다. 왜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인지 『10포인트』에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고유영토의 근거를 찾으면, <표 1>에 열거된 「일본정부견해」 외에는 보이지 않는다. 본고는 이들 「일본정부견해」에 제시된 일본 정부의 고유영토론을 분석한다.

본고의 인용문에서 ( )안은 원문대로이며, [ ]안은 필자의 주다. 또한 인용문에서 ‘다케시마’가 독도를 가리킬 때는 ‘竹島[독도]’라고 쓰고, 단지 ‘다케시마’라고 쓴 것은 일본 에도(江戸)시대의 호칭이며, 울릉도를

2) 「일본정부견해」 및 「한국정부견해」의 전문은 외무부, 1977, 『왕복외교문서(1952-1976)』 및 外務省, 『日韓外交正常化交渉の記録』, XV竹島問題(公開文書番号 910, 발간 연도는 불명)에서 공개되고 있다. 이들의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는 다음 글이 있다. 塚本孝, 「竹島領有權をめぐる日韓兩政府の見解」, 『レファレンス』 2002/6.

가리킨다. 또한 마쓰시마(松島)는 독도를 가리킨다.

<표1> 한·일 간 독도 영유권에 관한 구상서 교환

연월일	일본	한국
1953.7.13	일본정부견해 1	
1953.9.18		한국정부견해 1
1954.2.10	일본정부견해 2	
1954.9.25		한국정부견해 2
1956.9.20	일본정부견해 3	
1959.9.25		한국정부견해 3
1962.7.13	일본정부견해 4	
1965.12.17		한국정부견해 4

## 2. 고유영토론의 일반적인 문제점과 정의

‘고유영토’라는 주장은 세계적으로는 위험한 정치 용어라고 한다. 하바 구미코(羽場久美子)에 따르면, 남·북 아메리카나 호주 등에서 고유영토를 강조하면 유럽에서 온 백인 유민들은 모두 나가야 한다.<sup>3)</sup> 또한 역사적으로 민족 이동이나 국경의 변경을 자주 거듭해 온 유럽에서 고유영토를 강조하면 쉽게 혼란이나 분쟁에 빠질 수 있다. 특히 근대 이후의 고유영토론은 국제정치사에서는 금기이며, 제2차 세계 대전 결과 본래 국토의 20%를 잃은 독일에서는 고유영토라는 주장을 삼가고 있다. 만약 독일 등이 고유영토론을 내세워 실지 회복을 요구한다면, 예전에 수백 년간 벌였던 영토를 둘러싼 항쟁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원래 서양에서는 고유영토의 개념이 희박하다. 그 이유는 유럽에서는 자주 민족의 이동이 있었으며, 섬나라인 영국조차 지배 민족이 교체되었

3) 羽場久美子, 「尖閣·竹島をめぐる「固有の領土」論の危うさ」, 『世界』, 2013/2, 43쪽.

을 정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어에는 고유영토라는 단어가 없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는 고유영토라는 단어를 영어로 번역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고, 그로 인해 고유영토에 대한 영역(英譯)을 다음과 같이 몇 번이나 변경했다.<sup>4)</sup> 외무성의 『외교청서』 1990년판에서는 고유영토를 ‘the exclusive rights on the island’ 라고 영역했다. 이를 다시 번역하면 ‘섬의 배타적 권리’가 되므로 고유영토의 의미와는 멀다. 이 때문에 1991~1992년판에서는 고유영토의 영역을 포기했는지 단순히 ‘Japanese territory’ 라고 표현했다. 2000년 이후는 ‘an integral part of Japan’ 라고 영역했는데, 여기에는 ‘예로부터의 영토’라는 의미는 거의 없다.<sup>5)</sup> 2013년 이후는 ‘inherent territory of Japan’을 사용했는데, 이는 “미국인 영어 교수에 따르면, ‘inherent’라는 뜻은 항구적이고 본질적이라는 의미를 포함하는데, 거의 모든 나라들의 영토는 ‘항구적’인 것도 ‘본질적’인 것도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sup>6)</sup>라는 것이다. 결국 고유영토라는 말이 모호하므로 영역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이 유럽에서는 고유영토의 개념이 희박하고, 그 위에 고유영토 주장이 억제되고 있는 상황은 동아시아의 현실에 비추어보면 바람직한 일이다. 동아시아에서는 말할 것도 없이 고유영토 주장이 위협 수위에 있으며, 때로는 붓물이 쏟아질 듯이 두 나라 사이의 우호관계를 하루 아침에 파괴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는 위협한 고유영토론을 피할 것이 아니라, 고유영토의 의미나 용법 등을 잘 분석하고 고유영토라는 용어의 사용을 학문적으로 통제해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고유영토라는 말은 ‘옛날부터의 영토’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한국의 경우, 17세기 말 일본이 울릉도의 영유를 포기한 이후 주변 도서의 소속 문제가 20세기 초까지 사라졌기 때문에 고유영

4) 池内敏, 『竹島—もうひとつの日韓関係史』, 中公新書, 2016, 244-245쪽.

5) 한국 외교부 홈페이지([http://www.mofa.go.kr/eng/wpge/m\\_5441/contents.do](http://www.mofa.go.kr/eng/wpge/m_5441/contents.do))는 독도를 ‘an integral part of Korean territory’ 라고 한다.

6) 名嘉憲夫, 『領土問題から「国境画定問題」へ』, 明石新書, 2013, 31쪽.

토라는 말을 ‘옛날부터의 영토’라는 뜻으로 쓰더라도 거의 문제가 없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는 사정이 복잡하다. 예를 들어 오키나와(沖縄)는 일찍이 류큐(琉球)왕국이었는데 일본 정부는 1872년(明治5)에 류큐왕국을 폐하고 류큐번의 설치를 결정했다. 소위 ‘류큐 처분’의 시작이며, 일본은 힘으로 류큐를 일본 영토로 편입했다. 그러다가 1945년 전쟁 중에 미국이 오키나와를 점령했고, 그 통치가 연합군에 의해 인정되었다. 1952년에는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 따라 미국의 통치하에 놓였다가 1972년에는 다시 일본 영토로 되었다. 한편 홋카이도(北海道)는 에도시대에는 남부 마쓰마에(松前)를 중심으로 한 일부 지역만이 일본에 의해 지배되고, 그 외 대부분은 선주민인 아이누가 사는 땅이었다. 메이지 시대에 들어서자 일본 정부는 1869년에 개척사(開拓使)를 파견해 홋카이도 전체를 서서히 지배하기 시작했다.

이런 류큐나 홋카이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부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유럽에서는, “19세기나 20세기에 국가가 취득한 영토를 ‘고유영토(native territory, native land)’라고 말하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sup>7)</sup>고 한다. 이 기준에서 볼 때 오키나와 및 홋카이도조차도 일본의 고유영토가 될 수 없는데, 더군다나 국경지대에 있는 센카쿠(尖閣, 닌오위다오)제도나 구나시리·에토로후 등은 도저히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말할 수 없다.

이처럼 일본에서는 고유영토를 ‘옛날부터의 영토’라고 정의하면 많은 문제가 생긴다. 이 때문인지 시모조 마사오는, “고유영토라는 개념은 지금까지 외국에 의해 지배당한 일이 없는 영토를 말한다”<sup>8)</sup>라고 주장한다. 쓰카모토 다카시(塚本孝)도 고유영토는 “자의(字義)로서는 본래의 영토, 한 번도 외국의 영토가 된 적이 없었던 영토”<sup>9)</sup>라고 한다. 그러나 이들

7) 羽場久美子, 앞의 글, 43쪽.

8) 下條正男, 「実事求是, 第20回-日韓のトゲ, 竹島問題を考える」, 『竹島問題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2009年度, 2011, 34쪽.

9) 塚本孝, 「Q6 「わが国固有の領土」とはどういうことか」, 『竹島問題100問100答』, WILL, 2014, 26쪽.

의 주장에 따르면, 오키나와는 옛날에는 류큐왕국이라는 외국이었으며, 전쟁 후에도 미국 영토의 시기가 있었으므로 고유영토로 될 수 없다.

현재 일본 정부는 고유영토의 정의를 밝히지 않고 있지만, 일찍이 고유영토의 필요조건을 제시한 바가 있었다. 1954년 「일본정부견해2」는, “개국 이전 일본에는 국제법의 적용이 없었으므로 당시는 실제로 일본에서 일본 영토라고 생각해 일본 영토로서 다루고 있었고, 다른 나라가 이를 다투지 않으면 그것으로 영유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된다”<sup>10)</sup>라고 주장했다. 이 주장에서 ‘일본’이라는 단어를 보편화하면 일반적으로 통용될 것이다. 이를 참고해서 고유영토를 감히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근대국제법의 적용 이전에 특정국이 영유 의사를 가진 영역에 대해 타국이 그 영역의 영유를 다투지 않거나 혹은 다투더라도 결과적으로 그 영역을 특정국의 영역으로 인정한다면 그 영역은 특정국의 고유영토다. 이는 영역의 역사적 권원(權原)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근대국제법의 적용 이전에 정복된 영역도 정복한 나라의 고유영토가 되는데, 이것이 정복된 나라 사람들의 의식에 맞지 않을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또한 이 정의에 따르면 근대국제법에 따라 편입한 오키나와 등은 일본 고유의 영토가 아니다.

### 3. 「한국정부견해」의 문제점

#### 1) 우산도와 우산국

한국 정부는 독도를 한국 영토로 삼는 유력한 근거의 하나로서 일관되게 『세종실록』 「지리지」를 거론했다. 예를 들어 「한국정부견해1」은 이 문헌에 “우산(于山)과 무릉(武陵) 두 섬이 [울진]현의 정동쪽 바다 가

10) 外務省, 앞의 책, XV-85쪽.



운데 있다. 두 섬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sup>11)</sup>라고 기록되었다고 적었다. 실제로 맑은 날에만 울릉도에서 바라볼 수 있는 섬은 독도뿐이므로 우산도는 독도라고 생각된다. 이에 대해 「일본정부견해2」는 이 「지리지」에, “신라 때에 우산국이라고 칭했다, 일설에 울릉도라 말한다”라고 기록되고 있는 것이나,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 “일설에 우산, 울릉은 본래 1도”라고 기록된 것, 『문헌촬록(文獻撮錄)』이 삼봉도(三峰島), 우산도, 울릉도가 모두 같은 섬임을 분명히 설명하고 있다는 것 등을 지적했다.

이 반론에 대해 한국 정부는 우산도와 우산국을 구별하고 우산도가 울릉도와 함께 우산국의 일부인 것, “일설에 우산, 울릉은 본래 1도”라는 글은 단지 모호한 일설을 소개했을 뿐이며, 본래 『동국여지승람』은 “우산도와 울릉도, 이 두 섬은 울진현의 정동쪽 해중에 위치한다”라고 기록했다는 것, 『문헌촬록』은 개인의 수록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는 “여지지(輿地志)에 이르되 울릉과 우산은 다 우산국 땅이다. 우산은 왜가 이르는 마쓰시마(松島)이다”라고 기록하고 우산도와 울릉도를 분명히 구별하고 있었다는 것 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일본정부견해3」은 여러 문헌에서 우산도가 어떻게 기록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했다. 즉 『삼국사기』에서는 우산국은 울릉도, 『고려사』 「지리지」도 이와 같지만 우산·무릉 2도설도 기술, 『세종실록』 「지리지」는 우산·무릉 2도설이지만 1도설도 기록,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및 『증보문헌비고』 등은 2도설이지만 1도 2명의 의문도 남기고 있다는 것, 『지봉유설(芝峰類說)』 및 『문헌촬록』 등은 1도 2명설이라는 것 등을 지적했다. 이를 바탕으로 일본 정부는 “후세에 이르기까지 우산·울릉 양도의 관계는 확신을 가지고 기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일본 정부는 가령 울릉·우산이 별개의 섬이라 해도

11) 『世宗實錄』 「地理誌」의 원문은, 于山武陵二島 在縣正東海中 二島相去不遠 風日清明 則可望見 新羅時稱于山國 一云鬱陵島.

위의 문헌들은 “모두 다 울릉도 1도에 관한 것이며 우산도에 관한 구체적인 기술은 없다”고 하여, 이는 “이들 여러 문헌의 저자가 문제되는 섬에 관해 실제로 전문한 것을 기초로 한 명확한 지식이 없었으며 더욱이 이에 관한 인식은 후대에 이르기까지 새 발전이 없었음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문헌 중에서 『세종실록』이나 『신증동국여지승람』과 거의 같은 시기에 편찬된 『태종실록』에서는 우산도에는 86명이 살고 있었다고 하므로 우산도가 독도 아님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의 지적에 대해 「한국정부견해3」은 지난 번 설명의 주요 부분을 다시 강조함과 동시에 『증보문헌비고』가 울릉·우산 2도설에 일관되고 있는 점, 『삼국사기』가 울릉도를 우산국으로 보았을지라도 우산국에는 울릉도 주변 섬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그러나 『태종실록』에 관해서는 침묵한 채였다.

## 2) 삼봉도(三峰島)

한국 정부는 독도가 조선시대에 삼봉도로 불렸던 일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즉 「한국정부견해1」은 『동국여지승람』에 따르면, 김자주(金自周)가 인솔한 조사단이 삼봉도로 건너가 “우리들이 정박한 섬에서 7, 8리 동쪽에 세 바위 봉우리가 보이며...이 섬의 형편을 그림에 그리고 돌아왔다”라는 기록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기록은 「일본정부견해2」가 지적했듯이 『성종실록(成宗實錄)』의 기록이다. 이에 따르면 김자주는 “25일에 서쪽으로 섬이 7, 8리 남짓한 거리에 정박하고 바라보니, 섬 북쪽에 세 바위가 벌여 섰고, 그 다음은 작은 섬, 다음은 암석이 벌여 섰으며, 다음은 복판 섬이고, 복판 섬 서쪽에 또 작은 섬이 있는데, 다 바닷물이 통합니다. 또 바다 섬 사이에는 인형 같은 것이 별도로 선 것이 30개나 되므로 의심이 나고 두려워서 곧바로 갈 수 없어 섬 모양을 그려 왔습니다”<sup>12)</sup>라고 보고했다. 섬 모양을 그린 그림은 알려지지 않았으며, 위

의 기록만으로 삼봉도를 독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는 삼봉도가 독도임을 논증하지 않았으며, 『문헌촬록』이 삼봉도와 울릉도를 같은 섬으로 보고 있다고 반론했다. 이 반론에 대해 「한국정부견해2」는 『증보문헌비고』를 인용하고, 단지 박종원(朴宗元)이 성종 2년에 삼봉도를 조사하기 위해 파견되었지만 풍파 때문에 도달하지 못했으며 울릉도에서 하루 밤 지내고 대나무 등을 지니고 돌아왔다는 사실만을 적었다. 이처럼 한국 정부는 김자주의 기사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 3) 안용복사건과 우산도

한국 정부는 독도에 대한 영유권 근거의 하나로 안용복(安龍福)사건을 거론했다. 「한국정부견해1」은 『숙종실록』을 바탕으로, “1696년 안용복을 포함한 한국인 일행이 울릉도와 독도로 건너가 일본 배가 이들 두 섬에 접근하지 않도록 엄중히 경고하고 이들 두 섬이 한국에 속하는 것을 언도했다. 이처럼 한국인은 한국의 필수적인 영토의 일부인 울릉도 및 독도 수역을 일본인의 침략으로부터 지켰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일본정부견해2」는 『숙종실록』의 기사는 안용복이 귀국 후 비변사에서 조사를 받았을 때의 진술에 따른 것인데 허위가 많다고 주장하고, 그 예로 1696년에 일본 어민들은 울릉도에 도항하지 않았다고 반론했다.

이 반론에 대해 「한국정부견해2」는 여전히 『숙종실록』의 기사를 사실로 간주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인용했다. 즉 안용복이 울릉도에서 일본인들을 발견하고 그들의 범경(犯境)을 비난하고, 그들을 우산도까지 추격해 일본이 말하는 마쓰시마(松島)는 우리나라 우산도라고 논박하고 일본인들을 쫓아냈다고 썼다. 이에 대해 「일본정부견해3」은 “이 사건을 일본 측에 남아 있는 상세한 안용복 도래에 관한 기록과 비교 대조하면, 사실

12) 『成宗實錄』 成宗7年10月壬丁酉條.

이 아닌 것을 작위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뿐만 아니라 그가 어떤 언동을 하거나 일개 사인인 그의 언동은 한국이 竹島[독도] 영유를 주장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안용복의 진술에 대해서는 그 당시 조선 정부도 허위가 많다고 보고 있었다.<sup>13)</sup> 『속중실록』에 따르면, 1694년에 접위관(接慰官)으로서 파견되어 안용복을 문초한 일이 있었던 승지 유집일(兪集一)은 1696년 10월 왕이 대신과 비국(備局)의 제신을 인견한 자리에서, “왜인은 모두 죽도[울릉도]가 호기(伯耆)주의 식읍(食邑)이라 하므로, 안용복이 한번 말하였다 하여 조선 땅이라 쾌히 말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안용복의 정문(呈文) 가운데는 울릉도를 본국 땅이라고 여러 번 말하였으나, 왜인이 문답한 문서와 안용복을 내보낸다는 문서에서는 일절 거론하지 않았습시다. 이러한 사정들은 매우 의심스러우니, 다시 핵사(覈査)하여 실정을 알아 낸 뒤에 죄를 논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sup>14)</sup>라고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던 것이다. 이처럼 조정은 안용복 진술의 진위를 잘 가리고 있었으며, 그가 말한 영토에 관한 서계의 존재를 믿지 않았다. 이런 『속중실록』의 기사를 한국 정부나 일본 정부는 간과했던 듯하다.

일본 정부의 지적에 대해 「한국정부견해」<sup>3)</sup>은 구체적인 반론을 하지 않고 단지 “안용복의 도일 담판 사건은 우리의 허다한 관사(官私) 기록에서 분명할 뿐 아니라 또한 일본 측 기록(삼국통항일람, 三国通航一覽)에도 나타나는 저명한 사실이며 이것이 당시 일본국 정부에 큰 충격을 주어 마침내 이것으로 말미암아 일본 측이 자국민의 이 방면으로의 출어를 금하였던 것은 속일 수 없는 소연한 사실이다”라고 썼을 뿐이다. 하선은 필자가 그었는데 이 부분은 일본 측 기록 『日韓國交正常化交渉の記録』에는 없다. 또한 ‘삼국통항일람’은 『통항일람』의 잘못이다. 위와

13) 박병섭, 『안용복 사건에 대한 검증』,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7, 36쪽(한국어), 34쪽(일본어).

14) 『속중실록』, 1696년 10월 23일.

같이 한국 정부는 안용복 사건을 영유권 주장에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던 듯하다.

#### 4) 심흥택(沈興澤)보고서

한국 정부는 1906년에 시마네(島根)현 사무관들이 울도 군수를 방문한 사실을 정부에 알리는 심흥택 보고서를 독도 영유권의 유력한 근거의 하나로 활용했다. 즉 「한국정부견해1」은 이 보고서를 인용하여 “본군(本郡)에 소속된 섬인 독도···”라고 기록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일본정부견해2」는 “바른 원문이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의견을 말할 수 없다”라고 쓰면서, 이 해 3월에 울릉도를 방문한 시마네현 사무관이 군수와 면회하고, 독도에서 포획한 강치 한 마리를 선물로 하였더니 군수가 감사의 뜻을 말했다고 적었다. 게다가 일본 정부는 울도군 군수가 그때 독도를 울릉도에 부속된 섬으로 다루고 있었다면 군수는 사무관에 사례를 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군수가 독도에 대한 영유 의사를 가진 것은 1906년 심흥택 보고서에서 분명하며, 또한 중앙 정부 역시 영유 의사를 가졌던 것은 심흥택 보고서를 정부에 전달한 강원도관찰사서리 춘천군수 이명래의 「보고서 호외(號外)」에서 분명하다. 참정대신은 이 안에 직접 지령 3호를 쓰고 독도에 대한 영유 의사를 밝힌 것이다.

### 4. 조선 정부의 독도에 대한 영유 의사

한·일 양국 정부 간의 외교 서한을 통한 독도 영유권 논쟁이 1965년에 끝난 후 독도에 관한 연구가 서서히 진행되고 중요한 사실이 줄줄이 밝혀졌다. 이들 성과를 감안하여 독도를 한국의 고유 영토라고 말할 수 있을지를 검토한다. 독도를 한국의 고유영토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국제

법의 적용이 시작되기 전인 전근대에 있어서 한국이 독도를 올바르게 인식하여 영유 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을 제시하고, 아울러 일본이 영유 의사를 가지지 않았거나, 혹은 영유의 근거가 충분하지 않았음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유는 독도가 어디의 누구나 인정하는 초기역적인 (immemorial) 한국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사정 때문에 일찍이 한국 정부는 미국이 한국에게 제시한 대일강화조약 초안에 대해 장차 “한·일 간에서 분쟁이 있을 수 있는 도서”<sup>15)</sup> 라고 생각한 독도나, 파랑도를 한국 영토로 규정하도록 미국에 요청했던 것이다. 그러나 독도에 관한 요구는 거부당했던 것이다.

먼저 조선 정부의 영유 의사를 고찰한다. 일찍이 「한국정부전해」가 인용했던 『세종실록』이나 『신증동국여지승람』 등은 독도를 올바르게 인식한 자료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전자는 우산도의 위치가 모호하며, 후자는 부속지도 「팔도총도」(八道總圖)에서 우산도가 울릉도 서쪽에 그려져 실제의 위치와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같은 시기에 작성된 『태종실록』은 우산도와 울릉도를 혼동하고 있는 듯하다. 이는 일본 정부가 지적했듯이 편자가 실제 견문을 바탕으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견문을 바탕으로 한 관찬서는 18세기에 들어와서야 등장한다. 이는 ‘울릉도 쟁계’를 기록한 『춘관지(春官志)』다. 이 책은 왕명을 따라 이맹휴(李盟休)가 예조에 있는 기록 등을 편찬해 초고를 1745년에 완성했는데, 그 후 몇 번이나 수정되었다.<sup>16)</sup> 이 책은 제목 ‘울릉도 쟁계’에서 안용복의 진술을 바탕으로 마쓰시마(松島, 독도)에 관해 다음과 같이 썼다.

드디어 닻을 올리고 3일 동안 밤낮으로 가서 울릉도에 정박하였다. 왜선(倭船)이 동쪽에서 이르자 용복은 선원에게 눈짓하여 결박지우라고 하였으나 선원은 겁을 먹어 움직이지 못했다. 용복이 혼자 앞에서 “무

15) 유진호, 「한일회담이 열리기까지(상)」, 『사상계』 1966/2, 94쪽.

16) 김문식, 「『春官志』筆写本の原文比較」, 『星湖學報』 4호, 2007, 287쪽.

엇 때문에 우리의 국경을 침범하였느냐?”고 욱을 퍼붓자, 왜는, “본래는 마쓰시마로 가는 것이며 마땅히 가야겠지요” 하고는 바로 떠나 버렸다. 용복은 또 뒤쫓아 마쓰시마에 이르러서는 “마쓰시마는 곧 우산도(芋山島)인데, 우산도도 우리나라 국경이라는 것을 듣지 못했느냐?”고 욱하면서 막대기를 휘둘러 가마솥을 부수자 왜는 크게 놀라 달아나 버렸다. 용복은 전(轉)해 호키주에 이르렀다.

이 글과 거의 같은 글이 『속중실록』(1696.9.25)에 기록되었는데, 이쪽은 안용복의 진술을 소개했을 뿐이다. 이에 반해 『춘관지』는 위의 글을 사건 기록으로 쓰고 있다. 이 외에도 두 문헌에는 약간 차이가 있다. 위의 우산도(芋山島)를 『속중실록』은 자산도(子山島)로 기록하였다. 이들은 모두 안용복의 진술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므로 芋山島와 자산도는 같은 섬이며 우산도(于山島)를 말한다.

안용복의 진술은 『속중실록』이 말하듯이 의문이 많으므로 위의 글도 그대로 믿을 수 없다. 일본의 자료와 대조하고, 양국의 공식 자료에서 일치한 사항이라면 사실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일본의 공식 자료 중에서는 특히 오기 대관(代官) 수하가 작성한 『겐로쿠 각서(元祿覺書)』<sup>17)</sup>가 중요하다. 이에 따르면 안용복은 대관 수하에게 마쓰시마에 5월 15일에 도착했다는 것, 다케시마·마쓰시마는 조선 강원도에 있는 울릉도·자산도라는 것, 두 섬 사이의 거리는 50리(200km)라는 것 등을 말했다. 이 거리는 실제 거리의 약 2.5배나 되지만, 그 당시 일본의 공식 자료도 40리라고 했으므로 큰 차이는 없다.<sup>18)</sup> 따라서 적어도 우산도(芋山島, 자산도)가 일본의 마쓰시마라는 안용복의 진술에는 허위가 없다.

한편 안용복이 일본인과 울릉도에서 만났는지 여부인데 이는 한·일

17) 『元祿九丙子年朝鮮舟着岸一卷之覺書』(村上家文書)를 『겐로쿠 각서』라고 약칭한다.

18) 두 섬 사이의 거리는 돗토리(鳥取)번이 에도 막부(幕府)로 1696년에 제출한 「小谷伊兵衛差出候竹嶋之繪圖」나 1724년에 제출한 「竹島之圖」 및 「竹嶋圖」에서는 모두 40리다.

양국 정부 간 팸플릿에서 큰 쟁점으로 되고 있다. 이 쟁점은 독도 영유권 문제에서는 핵심적인 논점이 아니지만, 이를 둘러싸고 양국 정부 및 연구자들이 활발히 논쟁을 벌이고 있으므로 다음에 이 문제도 고찰한다. 한국 외교부 팸플릿은 안용복이 일본 어민들에게 마쓰시마를 조선 영토라고 주장하고 그들의 영토 침범에 항의했다고 썼다. 일본 외무성 팸플릿은 1696년에 일본 어민들이 출어하지 않았으므로 그런 사실은 없다고 지적했다.

안용복이 일본인을 섬에서 쫓아냈다고 하는 위의 기사에 관해 『춘관지』나 『숙종실록』은 그 연도를 분명히 하지 않았다. 다만 그 기사에 이어 “용복은 전(轉)해 호키주에 이르렀다”(『춘관지』)라든지, “그[용복]가 승선해 [일본 배를] 쫓았던바 갑자기 광풍(狂風)을 맞아 옥기(玉岐[隱岐])주에 이르렀다”(『숙종실록』)라고 쓰고 있으므로 이 사건은 1696년 일로 생각되어 왔다.

그러나 안용복이 1696년에 오키로 간 것은 결코 갑자기 일본 배를 쫓아간 것이 아니라, 『겐로쿠 각서』 등에 따르면 ‘다케시마(울릉도)소송’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미리 관복이나 「조선팔도지도(朝鮮八道之圖)」 등을 준비하고 도항했던 것이다.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숙종실록』을 다시 읽으면, 위의 일본인을 쫓아냈다는 기사와 오키로 갔다는 기사 사이에는 비약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안용복이 스스로 오키로 갔던 해는 1696년에 틀림없지만, 일본인을 쫓아냈던 기사가 반드시 1696년의 일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일본의 사정을 살펴보면 돗토리(鳥取)번은 다케시마(울릉도)도해면허를 1696년 2월 막부(幕府)에 반납했으므로,<sup>19)</sup> 그 이후는 어민들의 다케시마 도항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훗날 돗토리번은 어민들이 1695년까지 도항했다고 막부에 1724년에 보고했다.<sup>20)</sup> 한편 1695년 돗토리번이

19) 『礮竹島覺書』.

20) 『竹嶋之書附』, 享保9年5月, 「覺」.



에도 막부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이 해 일본 어민들은 다케시마로 출어했지만 울릉도에 조선인이 있었기 때문에 어업을 포기하고 마쓰시마에서 조금 전복을 채취했다고 한다.<sup>21)</sup> 그렇다면 이 해에 안용복이 일본인과 울릉도에서 만났을 가능성이 있다.

안용복은 1693년 일본으로 납치되었다가 쓰시마(對島)번으로부터 동래부에 인도된 후 햇수로 2년 동안 옥에 갇혀 있었다고 했으므로 시기적으로 1695년 봄에 울릉도로 출어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그때 그는 일본인을 통해 마쓰시마라는 이름을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 일찍이 안용복은 1693년에는 마쓰시마라는 이름을 모르고, 귀국 후 단지 ‘큰 섬’이라고 말하고 있었으나,<sup>22)</sup> 1696년에 도일했을 때는 마쓰시마가 자산도임을 확실히 인식하고 있었다. 마쓰시마라는 이름은 일본인과 접촉하지 않는 한 얻을 수 없는 지식이기 때문에 안용복은 1695년에 일본인과 접촉하고 이를 알았다고 생각된다.<sup>23)</sup> 그렇다면 『숙종실록』의 마쓰시마에 관한 기사는 이때의 일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자산도를 실제로 보았던 안용복이 조선의 자산도는 일본의 마쓰시마라고 조·일 양국에서 주장하고, 이에 대해 양국에서 이의나 이론이 없었음이 『겐로쿠 각서』 및 『춘관지』 등 공적인 사료에서 확인된다. 특히 『춘관지』는 일본 정부가 요구하는 “실제 견문을 기초로 한” 관찬서다. 안용복이 자산도(우산도) 즉 마쓰시마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영토 주장을 펼친 것이 분명하다.

위의 『춘관지』 기사는 거의 그대로 관찬서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1770)나 『만기요람(萬機要覽)』(1808), 『증보문헌비고』(1908) 등에 계승되었다. 게다가 이들 관찬서는 모두 「여지지」를 인용해 앞에 쓴 것처럼 “여지지에 이르되, 울릉도와 우산은 다 우산국 땅이다. 우산은 왜가

21) 『竹嶋之書附』, 「亥十二月二十四日竹嶋之御尋書之御返答書」.

22) 『邊例集要』, 「麟陵島」.

23) 박병섭, 앞의 책, 2007, 75쪽(한국어), 70쪽(日本語).

이르는 마쓰시마(松島)이다”라고 기록했다. 이 중에서 특히 『증보문헌비고』가 200년에 걸친 편찬 사업의 소산이며 실록을 보완하는 관계 문헌이기 때문에 조선 정부가 우산도에 대해 영유 의사를 유지하고 있었음은 분명하다.<sup>24)</sup>

그러나 우산도의 정확한 위치는 공식으로는 기록되지 않았던 듯하다. 이 때문에 1696년에 울릉도를 조사한 장한상은 울릉도에서 오늘날의 독도를 확인했으나 그 섬 이름을 말하지 않았다. 또한 1711년에 울릉도를 수토한 박석창은 지도 「울릉도도형(鬱陵島圖形)」(1711)에서 울릉도로부터 동쪽에 2-3km에 위치하는 오늘날의 죽도(대섬)를 ‘소위 우산도’(所謂于山島)라고 기재했다. 우산도를 죽도와 혼동한 것이다. 조선 정부는 일단은 우산도의 위치를 파악했으나, 다시 그 위치가 다시 모호하게 되었던 것이다.

## 5. 조선 사서에 대한 비판

일본인 연구자 중에는 시모조 마사오처럼 조선 사서에 관해 『동국문헌비고』는 개찬되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있다. 그는, “이 개찬설은 내가 김병렬 씨와 논쟁했던 후 반증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다케시마가 한국 영토가 아님을 보여주는 확증의 하나다”<sup>25)</sup>라고 쓰고 개찬설이 요지부동처럼 말한다. 또한 외무성의 『10포인트』도 그 개찬설을 소개하는 등 무시할 수 없으므로 그들의 조선 사서에 대한 비판의 타당성을 살펴본다.

먼저 관찬서 『춘관지(『春官志』)』에 대한 비판이다. 시모조 마사오<sup>26)</sup>

24) 堀和生, 「一九〇五年日本の竹島領土編入」, 『朝鮮史研究会論文集』 24号、1987、100쪽.

25) 下條正男, 「竹島問題で跋扈する日本人リベラル学者たち」, 『別冊正論』 31호、2018、105쪽.

26) 下條正男, 「実事求是、第21回<朴炳涉氏の「下條正男の論説を分析する」(『獨島研究』第4号)を駁す>」, 『竹島問題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平成21年度版、島

나 이케우치 사토시(池内敏)<sup>27)</sup> 등은 『춘관지』에, “우산(于山)도 우릉(羽陵)도 울릉(蔚陵)도 무릉(武陵)도 의죽(礮竹)도 모두 음이 와전(訛傳)되었다”라고 기록되었으므로 우산(于山)은 울릉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원고 단계의 『춘관지』에만 보이며 완성된 고본(稿本)에는 ‘우산’이라는 글자가 삭제되고 있다. 분명히 원고의 잘못을 수정한 것이며, 따라서 이를 간과한 시모조 등의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sup>28)</sup>

다음은 시모조 마사오가 주장하는 『동국문헌비고』 개찬설이다. 그는 『동국문헌비고』에 기재된 “울릉·우산은 모두 우산국의 땅, 우산은 즉 왜가 말하는 마쓰시마다”라는 글에 관해, 당초 1997년에 발표한 논문에서는 “『동국문헌비고』는 『춘관지』를 개찬했다”고 주장했다.<sup>29)</sup> 시모조가 말하는 개찬된 내용은, “『춘관지』의 분주(分註)에서는, “이 섬은 대나무를 산출하므로 죽도(竹島)라고 말한다. 세 봉우리가 있는 때문인지 삼봉도(三峰島)라고 한다. 우산도 우릉도 울릉도 무릉도 의죽도 모두 음이 와전되었다”고 기록되고 있었는데, 『동국문헌비고』 [분주]에서는 “우산은 즉 왜가 말하는 마쓰시마다”라고 변경되어 기술되고 있다”<sup>30)</sup>라는 것이다. 이 글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시모조는 『동국문헌비고』 분주의 첫머리에 “여지지는 말한다”라는 글이 있다는 것을 1997년의 논문에서는 웬지 말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 글에 의해 문제된 분주는 「여지지」로부터의 인용이며, 결코 『춘관지』의 개찬이 아님은 자명하다. 따라서 시모조의 첫째 개찬설은 전혀 성립되지 않다.

시모조는 위의 결함을 해결하기 위해서인지 다음에는 ‘개찬’의 대상 원본을 『강계지(疆界誌)』로 바꾸고 아래와 같이 주장했다.

---

根県総務部、2011、38쪽.

27) 池内敏, 앞의 책, 2016, 22쪽.

28) 박병섭, 「池内敏의 『竹島-또 하나의 일·한 관계사』, 『獨島研究』 20号, 2016, 243쪽(한국어), 288쪽(일본어).

29) 下條正男, 「続・竹島問題考(下)」, 『現代コリア』, 1997, 47쪽.

30) 下條正男, 「『竹島紀事』と『春官志』覚書」, 『国際開発学研究』 2卷4号, 85쪽의 (注4).

『동국문헌비고』는 신경준(申景濬)의 『강계지』를 저본(底本)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저본의 『강계지』를 보면, 해당 부분에서는 “여지지에 이르기를, 일설에 우산과 울릉은 원래 한 섬이다”라고 인용되어 있었으며, 『동국문헌비고』의 분주(分註)에 인용된 「여지지」와는 문장이 다르다. 게다가 신경준의 『강계지』에 인용된 「여지지」를 원전인 유형원(柳馨遠)의 『동국여지지』(東國輿地志)에서 확인해 보면, 거기에는 “일설에 우산과 울릉은 본래 한 섬이다”라고 되어 있었다.

이 사실은, 『동국문헌비고』에서 “우산도는 왜가 말하는 마쓰시마다”라고 기재된 분주는, 유형원의 『동국여지지』에서 유래한 것이 아니라, 『동국문헌비고』의 편찬 과정에서 날조되어 있었던 것이다.<sup>31)</sup>

시모조는 둘째 개찬설에서 신경준(申景濬)의 『강계지(疆界誌)』를 거론했는데, 이런 사찬서(私撰書)는 어디까지나 개인의 견해이며, 국가의 공식 견해와 무관하다. 국가의 견해를 알기 위해서는 관찬서나 공적 기록 등을 참조해야 할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따라서 개인의 저서인 『강계지』를 검토하는 의의는 적으며, 신경준이 개찬을 하거나 말거나 영유권 문제에 있어서는 관찬서나 공식 문서에 기재된 기사만이 중요하다. 만일 신경준이 무슨 개찬을 했다면, 신경준은 개찬을 했더라도 그런 기술을 남기고 싶었던 것으로 이해해야 하며, 기술된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된다. 시모조가 문제로 삼은 『동국문헌비고』 분주의 경우 「여지지」라는 서명을 별도로 하면, 그 내용이 타당함은 일본의 공적인 자료 『겐로쿠 각서』 등에서 확인된다.

이런 전제하에 시모조의 둘째 개찬설이 성립될지 살펴본다. 시모조의 둘째 개찬설에 대해 박병섭은 세 가지 의문을 제시했다.<sup>32)</sup> 첫째 의문점은 문헌의 인용 방법이다. 시모조는 『동국여지지』에는 “일설에 우산과

31) 下條正男, 「最終報告にあたって」, 『竹島問題に関する調査研究最終報告書』, 2007, 3쪽.

32) 박병섭, 「시모조 마사오(下條正男)의 논설을 분석한다(2)」, 『독도연구』 7호, 2009a, 125-128쪽.

울릉은 본래 한 섬이다”라고 기록되고 있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틀린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동국여지지』의 취지에 반한다. 이 책은 “우산도 울릉도, 일설에 무릉 …[도중 생략] 바람에 따라서는 이틀로 도달할 수 있다. 일설에 우산 울릉은 본래 1도”라고 기록했다. 이는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기술과 똑같으며, 분명히 『동국여지지』는 우산·울릉 2도설이다. 그런데 시모조처럼 자의적으로 문헌의 일부분을 잘라내면 이 책의 취지는 우산·울릉 1도설로 되어버린다. 일반적으로 문헌을 자의적으로 인용하면 문헌의 취지와 전혀 다른 결론을 도출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런 자의적인 인용에 따른 논고는 신뢰할 수 없음은 말할 것도 없다.

둘째 의문점은 시모조가 「여지지」를 『동국여지지』로 본 것이다. 『동국문헌비고』같은 격식을 중시하는 관찬서가 인용서를 정식 이름이 아니라 약식 이름으로 표기한다는 것은 좀 생각하기 어렵다. 또한 두 문헌의 성립 연대나 체제도 문제가 될 것이다. 「여지지」는 1656년에 유형원에 의해 저술되었고 그 체제는 전13권이라고 한다.<sup>33)</sup> 한편 규장각이 소장하는 『동국여지지』는 1659년 이후에 간행되었고,<sup>34)</sup> 그 체제는 전10권이다. 박인호는 저자가 유형원이라 했지만,<sup>35)</sup> 송병기는 저자 불명이며 「여지지」와 다르다고 주장한다.<sup>36)</sup> 두 책은 간행 후에 수정이나 개정이 있었는지도 불명이지만 두 문헌이 동일하다고 보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sup>37)</sup>

셋째 의문점은 『강계지』가 인용한 「여지지」의 범위다. 원래 이 문헌의 원문은 “愚按 輿地志云 一說于山鬱陵本一島 而考諸圖志二島也 一則倭所謂松島 而蓋二島俱是于山國也”다. 시모조는 「여지지」의 인용 범위는 위와 같이 “일설에 우산과 울릉은 본래 한 섬이다”라고 했는데, 송병

33) 유미림, 「한국 문헌의 ‘울릉·우산’ 기술에 관한 고찰」, 『동양정치사상사』, 8권 1호, 2009, 202쪽.

34) 양보경, 「磻溪柳馨遠의 地理思想」, 『문화역사지리』 제4호, 1992, p.35.

35) 박仁鎬, 「柳馨遠의 東國輿地志에 대한 一考察」, 『淸溪史學』6, 1989.

36) 송병기, 앞의 글, 297쪽.

37) 박병섭, 앞의 글, 2009a, 94-95쪽(日本語), 125쪽(한국어).

기는 그 글에 이어 “그런데 여러 도지(圖志)를 살펴보니 두 섬이다. 한 섬은 바로 왜가 말하는 마쓰시마이다. 대개 두 섬은 모두 우산국이다”까 지라고 주장했다.<sup>38)</sup> 이 외에도 인용 범위에 관해서는 여러 설이 있지만,<sup>39)</sup> 모두 다 추정에 불과하다.

이처럼 시모조의 둘째 개찬설에 대해서는 세 가지 의문이 제기되어 있으나, 시모조는 여전히 같은 취지의 개찬설을 되풀이하고 있다.<sup>40)</sup> 그러나 시모조의 개찬설이 어떠한든 조선 정부의 견해는 관찬서 『동국문헌비고』에 제시되었듯이 조선 땅인 우산도는 일본이 부르는 마쓰시마라는 것이며, 이 인식이 그 후 20세기 관찬서 『증보문헌비고』까지 계승되었다. 조선 정부가 우산도(마쓰시마)에 확고한 영유 의사를 가졌던 것이 분명하다.

## 6. 대한제국의 독도에 대한 영유 의사

우산도와 죽도(대섬)와의 혼동은 1882년 이규원(李奎遠)의 울릉도 검찰로 해소되었다. 이규원이 검찰 후 조정에 제출한 「울릉도외도(鬱陵島外圖)」에 죽도 이름이 올바르게 기재되었다. 그러나 그는 우산도를 찾지 못했으며 울릉도 주민들도 우산도의 위치를 몰랐다. 또한 주민들은 1900년에 한·일 공동으로 배를 구입해 우산도를 탐색했으나 발견하지 못하고 실패했다.<sup>41)</sup> 우산도는 문헌에만 기재된 전설의 섬이 되었던 것이다.

한편 울릉도 주민들은 예전부터 독자적으로 독도를 발견하고 있었다. 그들은 거문도나 초도 등 전라도 출신자가 많았는데 그들은 봄에 울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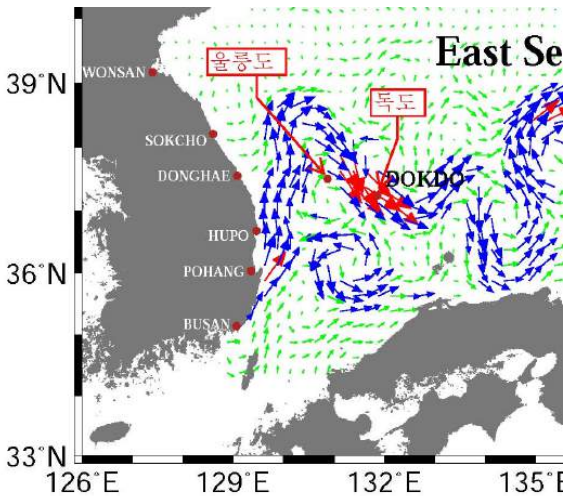
38) 송병기, 「獨島(竹島)問題 再檢討」, 『東北亞歷史論叢』 18号, 2007, 295頁.

39) 유미림, 앞의 글, 198-199쪽.

40) 下條正男, 「竹島問題と歴史認識問題」, 『海外事情』, 2014/1, 45-46쪽; 下條正男, 「歴史的見地から見た竹島問題」, 『不条理とたたかう』 2017, 188-190쪽.

41) 박병섭, 『한말 울릉도·독도 어업』,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9b, 220-221쪽(일본어), 80-81쪽(한국어).

도에 가서 미역을 채취하거나 배를 만들고 가을에는 전라도로 돌아가는 어민들이었다. 그들이 오늘날의 독도를 확실하게 인식하게 된 것은 주로 그들의 표류에 있다고 생각된다. 당시의 배는 돛단배이기 때문에 비바람에 약하며, 외양항해에서는 표류가 많았다. 울릉도에서 일본 서북지방으로 가는 배는 2번에 1번은 표류했다고 한다.<sup>42)</sup> 울릉도로 가는 전라도 어민들의 배가 동해에서 표류하면 <그림 1>처럼 해류에 따라 독도 근처에 흘러가는 일이 많았다.<sup>43)</sup> 그들은 자기들이 발견한 바위섬을 ‘돌의 섬’의 뜻으로 독섬(전라도 방언), 혹은 돌섬(표준어)이라고 부르고, 거기에서 1894년경부터 강치잡이를 시작했다.<sup>44)</sup>



<그림 1> 동해 해류(한국해양조사원, 2015.6.9.)

42) 外務省記録 616-10, 「明治三十五年 鬱陵島狀況」, 『釜山領事館報告書二』 1902年5月30日; 外務省, 『通商彙纂』 第234号, 1902年10月16日, 47쪽.  
 43) 박병섭, 「근대기 독도의 영유권 문제」, 『독도 영유권 확립을 위한 연구 V』, 선인, 2013b, 173쪽.  
 44) 김수희, 「죽도의 날제정 이후 일본의 독도 연구 동향」, 『독도연구』 10호, 2011, 189-190쪽; 池内敏, 앞의 책, 2016, 173-174쪽.

이처럼 대한제국 시대에 울릉도 주민들에 의해 이용되었던 독섬은 1900년 칙령 41호에 규정된 울도군 범위에 ‘石島’ 표기로 명시되었다. 이 칙령 41호의 존재는 「한국정부건해」에는 기술되지 않았지만, 최근 외교부 팸플릿은 이를 영유권의 유력한 근거로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본 외무성의 『10포인트』는 石島를 독도라고 하는 것은 “한국의 억지스러운 해석”이라고 쓰고 있다.

그런데 石島를 현재는 ‘석도’라고 읽으므로 독도와 의 관련을 쉽게 연상할 수 없지만, 그 당시의 호칭은 ‘석도’가 아니었다. 일본 수로부의 수로지 등에 따르면, 그 당시 한국 각지에 있는 石島의 호칭은 일본어 가타카나 표기로 ‘トルソム’[도루소무], ‘トリソム’[도리소무], ‘トクソム’[도토쿠소무] 등이었다.<sup>45)</sup> ‘도루소무’나 ‘도리소무’의 한국어 어원은 말할 것도 없이 ‘돌섬’이다. 한편 ‘도토쿠소무’라고 불렀던 전라남도 고막리(古幕里)의 石島는 『한국지명총람』(1984)에서는 ‘독섬(石島)’이라는 표제어로 기재되고 있다. 이는 전라도 방언이며 ‘돌섬’을 의미한다.

한편 독도는 그 당시 돌섬으로 불렸다는 증언이 있다.<sup>46)</sup> 또한 1920년대에 독도는 ‘トクソン(도쿠손)’이라고 불렀던 것이 일본 외무성 자료에서 확인된다.<sup>47)</sup> 이 ‘トクソン(도쿠손)’은 ‘독섬’의 일본어 표기다. 이처럼 울릉도 주민들이 독섬으로 불렀던 독도가 한자로 石島라고 표기된 것이다. 그런데 울릉도에서는 1883년부터 개척민들의 이주가 시작되자 전라도 외의 출신자가 차차 늘어나, 이에 따라 전라도 방언인 독섬을 한자로 石島라고 표기하는 대신 獨島로 표기했다. 1904년에는 군함 니타카(新高)는 마쓰시마(울릉도)에서 리양코루토 암(독도)을 실견한 자에게서 들

45) 水路部, 『朝鮮水路誌』 제2개판, 1907; 水路部, 『日本水路誌』 제6권, 1911; 박병섭, 앞의 책, 2009b, 74-75쪽(한국어), 215-216쪽(일본어).

46) 김수희, 앞의 글, 189-190쪽.

47) 日本外務省, 『竹島漁業の変遷』, 1953, 36쪽; 朴炳涉, 「明治時代の鬱陵島漁業と竹島=獨島問題(2)」, 『北東アジア文化研究』 32号, 2010b, 45쪽; 박병섭, 「일본의 새 논조와 일제 강점기의 독도 어업」, 『독도연구』 9호, 2010a, 246쪽.



은 말로 “리앙코루토 암, 한인은 이를 獨島라고 쓰고”라고 기록했다.<sup>48)</sup>

또한 1906년에 울도 군수 심홍택이 울릉도·독도를 조사하는<sup>49)</sup> 시마네 현의 일행이 군수를 방문하고 독도가 일본 영지가 되었다고 말한 것 등을 알리는 보고서를 정부에 보냈는데, 이에서 먼저 “본군 소속 獨島가 외양 백 여리 외에 있다”고 쓰고 조사단의 행동을 보고했다. 이에 대해, 송병기가 발굴한 자료에 의하면 참정대신은 5월 10일자 지령 3호에서 독도 영지설은 전혀 무근하니 獨島의 형편과 일인들의 행동을 더 조사하고 보고할 것을 명했다.<sup>50)</sup> 이 지령 3호와 칙령 41호 등을 보면, 대한 제국 정부가 독도에 대해 영유 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이런 연구 성과를 보고 예전에 ‘石島=獨島’설은 “도저히 성립될 수 없는 유론(謬論)”이라고 생각했던 이케우치 사토시도 “돌섬(石島) - 독섬(石島/獨島) - 독도(獨島)라는 음운(音韻) 변화설에 객관적이고 문헌적인 방증을 준다”<sup>51)</sup>고 주장하게 되었다. 또한 이케우치는 칙령 41호에 관해 “石島가 어느 섬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그렇게 질문을 받으면 칙령의 石島는 다케시마(독도)라고 대답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sup>52)</sup> 그는 石島에 대한 견해를 크게 전환했던 것이다.

## 7. 일본정부의 ‘竹島(독도)고유영토론’

48) 『新高行動日誌』, 1904.9.25; 堀和生, 앞의 글, 114쪽.

49) 조사단에 참가한 奥原碧雲(福市)는 『竹島及鬱陵島』(1907) 78쪽에서 귀항 때 날씨가 악화되었으므로 울릉도로 피난했다고 썼는데, 아래 논문에 의하면, 일행은 당초부터 울릉도도 조사할 예정이었다. 박병섭, 앞의 책, 2013b, 180쪽.

50) 議政府外事局, 「各道監察案」1(奎章閣所藏); 宋炳基, 앞의 책, 187-188쪽.

51) 池内敏, 『日本人の朝鮮觀はいかにして形成されたか』, 講談社, 2017, 242쪽; 池内敏, 「죽도(독도)의 활용실태와 영유권(竹島(獨島)의活用実態と領有権)」, 『獨島研究』 23호, 2017, 278쪽.

52) 朴炳涉, 「池内敏著『竹島—もうひとつの日韓関係史』」, 『朝鮮史研究会会報』 209호, 2017b, 23쪽.

일본 정부가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4번에 걸친 「일본정부견해」 만에서 제시되었다. 이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sup>53)</sup>

돗토리번 어민인 오야 구에몬(大谷九右衛門)이 1681년 에도 막부에 제출한 「청서(請書)」에 따르면, 오야·무라카와 양가는 1656년 이전 아베 시로고로(阿倍四郎五郎)의 주선으로 막부에게서 마쓰시마(독도)를 배령해 강치잡이를 조금씩 행했다. 이는 막부의 ‘마쓰시마 도해면허’ 아래에서 행해졌으므로 일본은 마쓰시마를 실효적으로 지배했던 것이다. 양가가 실제로 마쓰시마를 경영한 것은 돗토리번이 막부로 제출한 「회답서」(1695)나 번주의 「각(覺)」(1696), ‘마쓰시마·다케시마의 지도(松島·竹島の圖, 1724)’, 오야가 나가사키봉행(長崎奉行)에게 제출한 「구상서(口上書)」(1741) 등에서 분명하다. 또한 『인슈(온슈)시청합기(隱州視聽合記)』(1667)에 다케시마·마쓰시마가 일본 서북의 한계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 후 ‘겐로쿠(元祿) 다케시마 일건’의 결과 다케시마(울릉도)로의 도해는 금지되었지만, 마쓰시마로의 도해는 금지되지 않았으며 여전히 일본 영토로 생각되어 왔다. 또한 마쓰시마가 일본 영토임은 『다케시마도설(竹島圖說)』이나 『장생다케시마기(長生竹島記)』 등에 기록되어 있다. 게다가 다케시마·마쓰시마의 존재는 「일본여지로정전도(日本輿地路程全圖)」나 『변요분계도고(邊要分界圖考)』 등에 의해서도 알려져 있다. 그 후도 마쓰시마로의 도해가 문제없었음은 ‘덴포(天保) 다케시마 일건’ 때 하치에몬(八右衛門)에 대한 판결문(1836)에서 분명하다. 하치에몬은 하마다(濱田)번 가로(家老)의 가신에게서 마쓰시마로 도향한다는 명목으로 다케시마로 도향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시사 받았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일본은 17세기 중반에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확립했으므로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이 주장에서 「일본정부견해」가 인용한 자료를 분류하면 다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53) 박병섭, 「일본정부의 독도 고유영토론에 관한 역사학적 검증」, 『동북아역사논총』 62호, 2018, 283-284쪽.

수 있다.

- ① 영유권 주장에는 거리가 있는 자료: 오야 가문의 「청서」, 『다케시마 도설』, 『장생다케시마기』, 『변요분계도고』.
- ② 오히려 일본 영토가 아님을 드러내는 자료: 돗토리번의 「회답서」, 번주의 「각」, 나가사키봉행에게 제출한 「구상서」, 하치에몬에 대한 판결문.
- ③ 잘못 해석한 자료: 『인슈(온슈)시청합기』, 「일본여지로정전도」, ‘마쓰시마·다케시마의 지도’.

먼저 유형 ①인데 일본 정부는 오야 가문의 「청서」에 다케시마로 가는 길목에 주위가 20정(2.2km) 정도의 소도가 있으며, 이 소도를 오야 가문이 배령했다는 기사가 있으므로, 이 글에서 ‘마쓰시마 도해 면허’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어민 등이 섬을 막부에서 배령한다는 것을 있을 수 없으며, 위의 글에서 ‘마쓰시마 도해 면허’가 있었다고 하는 일본 정부 주장은 논리의 비약이다. 이 결함을 메우기 위하여 가와카미 겐조는 ‘마쓰시마 도해 면허’설을 발전시켰다.<sup>54)</sup> 이 설은 쓰카모토 다카시(塚本孝),<sup>55)</sup> 이케우치 사토시,<sup>56)</sup> 박병섭<sup>57)</sup> 등에 의해 부정되고, 오늘날 이 설을 주장하는 자는 없다.

다음 자료, 『다케시마 도설』, 『장생 다케시마기』, 『변요분계도고』 등은 개인의 저서이므로 나라의 영유 의사와는 무관하다. 게다가 『다케시마도설』은 전해 온 말을 다시 듣고 옮긴 것이므로 훨씬 신뢰성이 떨어진다. 또한 『장생다케시마기』는 단지 역사소설에 불과하다.<sup>58)</sup> 마지막 『변

54) 川上健三, 『竹島の歴史地理学的研究』, 古今書院, 1966, 73쪽.

55) 塚本孝, 「竹島領有權問題の経緯」, 『調査と情報』 244号, 1994, 1쪽. 또한 第2版(1996), 第3版(2011)도 같음.

56) 池内敏, 『竹島問題とは何か』, 名古屋大学出版会, 2012, 47쪽.

57) 박병섭, 「17세기 일본인의 독도 어업과 영유권 문제」, 『독도연구』 15호, 2013a, 160-162쪽; 朴炳涉, 「江戸時代の竹島=独島での漁業と領有權問題」, 『北東アジア文化研究』 35号, 2012b, 20-25쪽.

58) 박병섭, 앞의 글, 2018, 307쪽.

요분계도고』에는 북동 아시아를 그린 「금소고정분계지도(今所考定分界之圖)」가 부속되고 이에 ‘다케시마(タケシマ)’와 ‘마쓰시마(マツシマ)’가 그려졌다. 이들은 울릉도와 독도라고 생각되지만, 이 지도에서 두 섬에 대한 일본의 확실한 영유 의사를 보기는 어렵다. 이 지도는 단지 일본이 두 섬을 알고 있다는 것을 드러냈을 뿐이다. 이들은 모두 다 영유권 주장에는 거리가 있는 자료들이다.

다음에 유형 ②인데, 일본 정부는 자료를 자의적으로 잘라내고 일본이 마쓰시마에서 어렵을 했던 것을 강조했으나, 이들 자료는 오히려 마쓰시마가 일본 영토가 아님을 드러내고 있다. 먼저 돗토리번의 1695년 「회답서」는 외무성이 주장하듯이 이 안에 “올해 이국인[조선인]이 [다케시마에] 많이 있었으므로 착안하지 않고 돌아오는 길에 마쓰시마에서 전복을 조금 채취했습니다”<sup>59)</sup>라고 기록되어 있다. 외무성은 이 글만 잘라내고 일본인들은 마쓰시마를 기항지로 이용함과 동시에 어렵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자료 중에는 “다케시마·마쓰시마 기타 양국[이나바국(因幡國)과 호키국(伯耆國)]에 부속된 섬은 없습니다”라고 회답하고 있으며, 마쓰시마가 돗토리번 영지가 아님을 드러냈다. 외무성에게는 상당히 불리한 자료다.

또한 돗토리 번주의 1696년 「각」도 사정은 비슷하다. 외무성은 이 문서에서, “마쓰시마에 어렵하러 간 것은 다케시마로 도해할 때 길목에 있으므로 들러서 어렵을 했습니다”<sup>60)</sup>라는 글을 잘라낸 것이다. 그러나 이 문서에는, “마쓰시마는 [일본의] 어느 나라[지방]에도 부속된 섬이 아니라고 듣고 있습니다”라는 글도 있으므로 외무성에게는 상당히 불리한

59) 『竹嶋之書附』(鳥取県立博物館所藏), 「亥十二月四日 竹嶋之御尋書之御返答書 同廿五日平馬持參 曾我六兵衛ニ渡ス」.

60) 『磯竹島覺書』(国立公文書館所藏), 「覺」. 다만 목차에서의 표제는 「同月[一六九六年一月]廿三日松平伯耆守留守居召寄 并相尋候趣伯耆守より書付を以申來事」. 이 「각」은 내용의 대부분이 『竹嶋之書附』 안에 표제 「元禄九年正月廿八日 小谷伊兵衛差出候竹嶋之書附」에서도 수록되고 있다.

자료가 될 것이다. 외무성은 이런 자료의 존재를 한국 측이 알 수 없다고 생각해 이들 자료를 인용한 듯하다. 실제로 그러했다. 그런 자료들을 편집한 『다케시마 문서(竹嶋之書附)』를 발굴하고 번각한 자는 일본인 연구자 쓰카모토 다카시이며,<sup>61)</sup> 그 자료를 독도 문제와 관련시킨 자는 나이토 세이추(内藤正中)였다.

다음 자료, 오야가 나가사키봉행에게 제출한 「구상서」도 사정은 비슷하다. 외무성은 이 「구상서」에 관해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지만, 이는 마쓰시마에 관해 “다이유인(大猷院, 德川家光)님 시절[1623~1650] 다케시마로 가는 항로에서 또한 마쓰시마라는 섬을 발견하고 신고했더니, 다케시마와 마찬가지로 지배를 맡겨 주셨습니다. 이 두 섬에 도해해 왔으므로 대단히 감사하고 있습니다”<sup>62)</sup>라고 기록하고 마쓰시마 도해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이케우치 사토시가 발굴한 관련문서 『무라카와가 문서(村川家文書)』 사본에 따르면, 1741년에 오야가 이 「구상서」를 제출했을 때 “겐로쿠 연간 다케시마·마쓰시마 양도의 도해금제가 내려졌다”라고 나가사키봉행에 설명했으며, 또한 이 전년에 나가사키봉행으로 찾아갈 것을 지시받은 지사봉행(寺社奉行)에게도 이미 “다케시마·마쓰시마 양도의 도해금제”<sup>63)</sup>라고 확인한 바 있었다. 다케시마에 실제로 도해했던 오야 가문은 1696년에 내려진 ‘겐로쿠 다케시마 도해금지령’에 마쓰시마 이름은 없어도 이를 다케시마·마쓰시마 도해금지로 이해했고, 1740년에 막부에서 확인했던 것이다.

마지막 자료, 하치에몬의 판결문을 인용한 일본정부는 하치에몬에 대한 판결문에서 하마다번 가로의 가신이 가까운 마쓰시마로의 도해 명목으로 다케시마로 건너갈 방법이 있다고 시사했으므로 다케시마로의 도향은 금지되었어도 마쓰시마로의 도향은 아무 문제가 없었으며 마쓰시

61) 塚本孝, 「竹島關係旧鳥取藩文書および絵図」(上), (下), 『レファレンス』 411, 412号, 1985.

62) 『竹島渡来由来記抜書控』, 「乍恐口上書ヲ以奉申上候」.

63) 池内敏, 「「国境」未滿」, 『日本史研究』 630号, 2015a, 16-18쪽.

마는 여전히 일본 영토로 생각되어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인용한 “가까운 마쓰시마”는 “위에 가장 가까운 마쓰시마”, 즉 “다케시마에 가장 가까운 마쓰시마”다. 다케시마로의 도해가 금지되었다면 이에 가장 가까운 마쓰시마로의 도해가 허용되었을 리가 없으며, 오야 가문도 그렇게 생각했다. 또한 마쓰시마 도해 명목을 구실로 삼은 하치에몬은 이를 인정받지 못했으며 처형당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하치에몬을 문초한 오사카마치봉행소(大坂町奉行所)는 다케시마·마쓰시마를 조선 영토로 판단하고 「다케시마방각도(竹嶋方角圖)」<sup>64)</sup>를 그렸던 것이다. 또한 막부의 최고 사법기관인 평정소의 관계자도 다케시마·마쓰시마를 조선 영토로 판단하고 「다케시마방각도」와 비슷한 그림<sup>65)</sup>을 그렸던 것이다.

이상과 같이 유형 ②의 자료 혹은 관련 자료는 모두 다 마쓰시마가 일본 영토가 아니거나, 혹은 조선 영토임을 드러내고 있다.

마지막 유형 ③은 일본 정부가 잘못 해석한 자료다. 일본정부는 『인슈시청합기』는 다케시마·마쓰시마가 일본 서북부의 한계로 기록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한국 정부로부터 오류라고 지적을 받았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반론하지 않았으며 묵인했다. 다음에 일본 정부는 「일본여지로정전도」를 나가쿠보 세키스이(長久保赤水)의 지도로서 인용했지만 확증이 없다. 또한 이 지도에는 출판자 이름 등이 없으므로 해적판이며,<sup>66)</sup> 그런 해적판을 인용하는 것은 영유권 주장에는 적절하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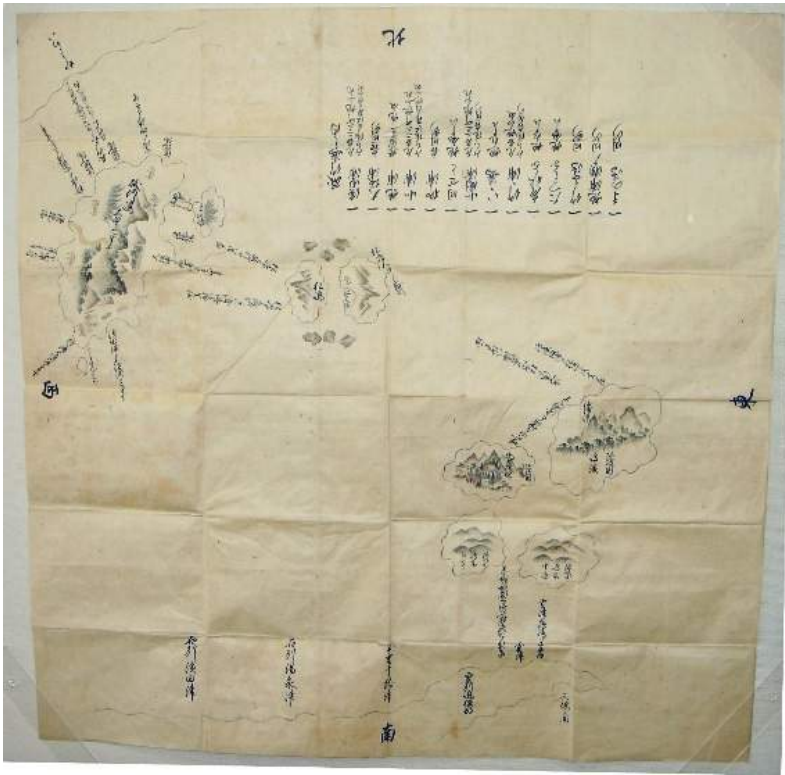
마지막 자료 ‘마쓰시마·다케시마의 지도’(1724)는 좀처럼 찾을 수 없었다. 이유는 일본 정부가 말하는 제목 및 연대가 틀렸기 때문이다. 이

64) 『竹嶋渡海一件記』(東京大学総合図書館所蔵)附属地圖; 박병섭, 「안용복사건 이후의 독도 영유권 문제」, 『독도연구』 13호, 2012a, 143쪽; 朴炳涉, 前掲論文, 2012b, 28쪽.

65) 『朝鮮竹嶋渡航始末記』(浜田市立図書館所蔵)附属地圖; 박병섭, 앞의 글, 2012a, 146쪽; 朴炳涉, 前掲論文, 2012b, 30쪽.

66) 馬場章, 『地図と絵図の政治文化史』, 東京大学出版会, 2001, 397쪽.

자료는 한·일 정부 간 영유권 논쟁 당시 외무성 직원인 모리타 요시오(森田芳雄)가 『외무성월보(外務省月報)』에 쓴 논문<sup>67)</sup>에서 판단하면, 「고타니 이헤가 제출한 다케시마의 회도」(小谷伊兵衛差出候竹嶋之繪圖, 「고타니 회도」로 약칭) <그림 2>를 가리키며, 1696년에 작성되었던 것이다.<sup>68)</sup>



<그림 2> 「고타니 이헤가 제출한 다케시마의 회도」

67) 森田芳夫, 「竹島領有をめぐる日韓兩國の歴史上の見解」, 『外務省調査月報』第2卷5号, 1961/5, 7쪽. 이 논문 끝에 (筆者はアジア局北東アジア課勤務)라고 쓰고 있다. 또한 森田는 논문에서 ‘船寄場’라고 썼는데 이는 ‘船すへ場’의 잘못이다.

68) 박병섭, 2018, 앞의 글, 299쪽.

이 「고타니 회도」는 마쓰시마에 소옥(小屋)을 그리는 등 일본의 마쓰시마 「경영」 상황을 제시하기에 적당한 회도다. 다만 이 회도의 의도를 보려면, 이와 같은 시기 막부에 제출된 「고타니 이해가 제출한 다케시마 문서」(小谷伊兵衛差出候竹嶋之書附, 「고타니 문서」로 약칭)를 함께 보아야 한다. 「고타니 문서」는 돗토리 번주의 「각」의 내용과 거의 같으며, “마쓰시마는 [일본의] 어느 나라[지방]에도 속하지 않다고 듣고 있습니다”<sup>69)</sup>라고 쓰고 있다. 따라서 「고타니 회도」도 마쓰시마가 일본 영토에 속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작성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고타니 회도」 등에서 가령 일본의 마쓰시마 「경영」 상황이 밝혀졌다 하더라도 조·일 간에서는 낙도의 실효적인 지배나 경영 등은 영유권과 무관했다. 이는 17세기 ‘울릉도 쟁계’(겐로쿠 다케시마 일진)의 결말에서 분명하다. 그때에 조·일 양국은 울릉도의 영유권을 다투었는데, 외교교섭 결과 울릉도는 조선에 가깝고 조선만이 영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로 조선 영토로 결정되었다. 70년에 걸친 일본의 울릉도 경영 등은 영유권과는 무관했던 것이다. 이는 조·일 양국 간에 확립된 낙도의 귀속에 관한 판단 기준이며,<sup>70)</sup> 광의의 국제법이라 할 수 있다.<sup>71)</sup> 이 판단 기준을 우산도(마쓰시마)에 적용하면, 우산도는 조선의 울릉도에 가깝고 조선만이 영유의사를 가졌으므로 우산도는 조선 영토가 된다.

이상과 같이 「일본정부견해」에서 제시된 자료들은 마쓰시마(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님을 뒷받침하는 것은 많지만, 반대로 일본 영토임을 뒷

69) 『竹嶋之書附』, 「元祿九年正月廿八日小谷伊兵衛差出候竹嶋之書附」.

70) 박병섭, 「독도 영유권에 대한 근대국제법의 적용 문제」, 『독도연구』 23호, 2017a, 113쪽(한국어), 158쪽(일본어).

71) ‘광의의 국제법’은 야나가하라 마사하루(柳原正治)의 아래 문헌에 따르면, 국가 간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라고 정의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국가는 근대국가에 한정되지 않으며, 법은 근대법에 한정되지 않는다. 柳原正治, 『國際法』, 放送大学教育振興会, 2014, 22쪽.



받침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에도 막부는 17-19세기에 마쓰시마(독도)에 영유 의사를 가지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 에도 막부의 마쓰시마에 대한 인식을 시대 순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① 1650-1660년대, 마쓰시마로 도해하고 있었던 오야·무라카와 양가나 아베 시로고로 등 막부 관계자들은 마쓰시마를 “다케시마 안의 마쓰시마” 즉 다케시마의 부속 섬처럼 인식하고 있었다.
- ② 1690년대, ‘겐로쿠 다케시마 일건’의 담당 로주인 아베 분고노카미(阿部豊後守)는 이 일건이 일어날 때까지 마쓰시마에 대한 영유 의사는 커녕 마쓰시마의 존재조차 몰랐다. 로주는 쓰시마번과 협의했을 때 ‘다케시마 근처에 마쓰시마가 있다’는 것을 알고, 돗토리번에 문의한 결과 마쓰시마가 돗토리번에도 일본의 어느 나라[지방]에도 속하지 않았음을 알았다. 다케시마 도해금지령 이후에 그런 마쓰시마로의 도해가 허용될 리가 없다.
- ③ 1740년대, 나가사키봉행이나, 막부의 중추기관인 지사봉행(寺社奉行) 등은 ‘겐로쿠 다케시마 도해금지령’으로 인해 마쓰시마로의 도해도 금지되었다는 것을 오야 가문과 함께 확인했다.
- ④ 1830년대, 하치에몬을 문초한 오사카마치봉행소(大坂町奉行所)는 다케시마·마쓰시마를 조선 영토로 판단하고 이를 나타내는 「다케시마 방각도」를 작성하고 막부 평정소(評定所)로 보냈다. 평정소는 다케시마·마쓰시마의 소속 등을 쓰시마번에 문의하고 조선지도 등도 조사했다. 이 결과 평정소 관계자는 다케시마 및 이에 가장 가까운 마쓰시마를 조선 영토로 판단하고 이를 드러내는 지도를 작성했다. 따라서 막부가 1837년에 내린 ‘덴포 다케시마 도해금지령’에 마쓰시마 이름은 없어도 마쓰시마로의 도해는 허용되지 않다.

## 8. 외무성의 『10포인트』에 대한 분석

일찍이 「일본정부견해」가 일본 고유영토의 근거로써 제시한 12개 자료는 현재 일본정부 팸플릿 『10포인트』에 하나도 인용되지 않았다. 그 자료들은 고유영토의 증거가 될 수 없음을 일본 정부 스스로가 인정한 것으로 된다. 대신 『10포인트』는 마쓰시마(독도)에 직접 관련된 자료로서 ‘다케시마의 지도(竹嶋之圖)’<그림 3>라고 칭하는 지도와 「개정일본여지로정전도(改正日本輿地路程全圖)」 2개만을 인용했다. 이런 지도들이 고유영토의 근거가 될 수 있을지 살펴본다.

먼저 ‘다케시마의 지도’라고 하는 지도인데 이에 대한 설명은 본문에는 없고, 삽화 설명에서 “竹嶋之圖(1724년경)/(사진 제공: 돗토리현립박물관)”이라고 썼을 뿐이다. 그런데 이는 돗토리현립박물관이 소장한 ‘다케시마의 지도 4장’(竹嶋之圖 四枚) 중 1장이며, 이 지도 고유의 표제는 없다. 돗토리현립박물관의 소장 기호는 #8442다. 이 지도는 박물관 관장(2007년 당시) 미타 기요토(三田清人)에 따르면, 돗토리번이 1724년에 막부에 제출한 지도들의 밑그림 회도 혹은 참고도라고 한다.<sup>72)</sup> 외무성은 왜 막부에 제출된 공적인 지도를 사용하지 않고 그런 지도를 사용했는지 의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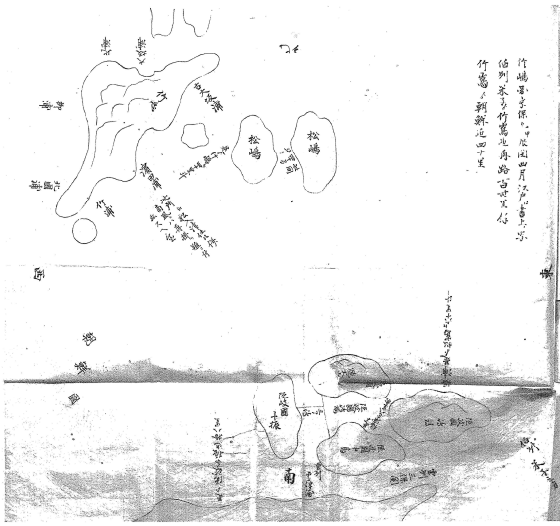
돗토리번이 막부에 제출한 지도는 3장이 알려져 있다. 즉 1696년 「고타니 회도」<그림 2>, 1724년 「다케시마지도(竹島之圖, #8439)」와 「다케시마도(竹嶋圖)」<sup>73)</sup><그림 4>다. 이들 가운데 일본의 마쓰시마에 대한 ‘경영’ 상황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시마네현 교육위원회 등의 전단처럼 「고타니 회도」<그림 2>를 게재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는 앞에 쓴 것처럼 마쓰시마에 ‘소옥’을 그렸기 때문이다.

72) 三田清人, 「鳥取県立博物館所蔵 竹島(鬱陵島)・松島(竹島/独島)關係資料」, 『竹島問題に関する調査研究 最終報告書』, 島根県, 2007, 47쪽.

73) 『竹嶋之書附』 부속 지도(1724).



<그림 3> '다케시마의 지도 4장' 중 1장, #8442



<그림 4> 『竹嶋之書附』 부속 「다케시마도(竹嶋圖)」

그러나 외무성은 「고타니 회도」 등 공적인 지도를 피하고, 자료 가치가 낮은 밑그림 회도 혹은 참고도에 불과한 「다케시마의 지도 4장」 중 1장을 골라 『10포인트』에 게재했다. 그 이유는 아마 외무성이 「고타니 회도」를 신고 싶어도 일찍이 이를 「일본정부견해4」가 「마쓰시마·다케시마의 지도」라고 소개했고 표제와 연대를 틀렸으므로 이런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였는지도 모른다. 혹은 「고타니 회도」가 「고타니 문서」와 관련되어 마쓰시마가 일본의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였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고타니 회도」 등에서 가령 일본 어민들의 마쓰시마 ‘경영’이 밝혀지더라도 막부에 제출된 「다케시마도」<그림 4>에서 드러났듯이 마쓰시마가 조선국 측에 있다면 일본인의 마쓰시마 ‘경영’은 조선 땅을 침략한 것이 된다. 그런 침입자가 마쓰시마에서 어떤 활동을 하더라도 영유권과는 무관하다.

다음은 나가쿠보 세키스이(1717-1801)의 지도를 살펴본다. 그의 「개정일본여지로정전도」는 초판이 1779년(安永8)에 출판되고, 제2판이 1791년(寛政3)에 출판되었다. 이를 약간 개정한 「개정일본여지로정전도」 제3판이 1811년(文化8)에, 제4판이 1833년(天保4)에, 제5판이 1840년(天保11)에 출판되었지만, 이들은 나가쿠보가 죽은 후에 개정, 출판되었으므로 나가쿠보의 지도라고 부를 수 없다. 나가쿠보 세키스이의 지도는 초판과 제2판에 한정된다. 이들 외에 「개정일본여지로정전도」라고 칭하는 지도가 많이 있으나 이들 지도에는 출판자 이름 등이 없으므로 모두 해적판이다.

나가쿠보의 「개정일본여지로정전도」의 특징의 하나는 외국이나 외국과의 경계 영역에 있는 섬들을 채색하지 않았다는 점이다.<sup>74)</sup> 따라서 채색되지 않은 다케시마·마쓰시마는 지도를 보는 자에게 혹여 일본 영토가 아니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 이를 고려했는지 외무성의 『10포인트』

74) 池内敏, 앞의 책, 2016, 132-138쪽.

는 본문에서는 나가쿠보 세키스이의 「개정일본여지로정전도」 초판을 인용했는데, 삽화에서는 ‘개정일본여지로정전도(1846)’라고 칭하는 지도를 게재했다. 특필할만한 일은 이 지도에는 출판자 이름 등이 없으므로 이는 분명히 해적판이다. 외무성도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삽화의 지도를 나가쿠보의 지도라고는 설명하지 않고 있다. 외무성이 일부러 해적판을 삽화로 사용한 이유는 다케시마·마쓰시마의 채색 때문인지도 모른다. 이 삽화 지도는 다케시마, 마쓰시마, 조선 등을 채색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보는 자는 다케시마·마쓰시마가 일본 영토가 아니라는 인상을 가질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나가쿠보의 지도도 해적판도 거의 모두 다 다케시마·마쓰시마를 한 쌍으로 그리고 두 섬 옆에 “고려를 보는 것은 운슈에서 인슈를 보는 것과 같다(見高麗猶雲州望隱州)”라고 기입했다. 이는 『인슈시청합기』의 기술 “見高麗如自雲州望隱州”를 인용한 것이며, 다케시마·마쓰시마를 일본 영토 외로 보는 『인슈시청합기』의 인식을 이어받은 것이다. 따라서 일본 외무성이 삽화로 인용한 ‘개정일본여지로정전도(1846)’조차 다케시마·마쓰시마는 일본 영토가 아니라는 뜻을 함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개정일본여지로정전도」는 개인이 작성한 지도이며, 공적인 허가를 받았다고 하나 에도 막부의 영토 인식을 직접 표현하는 것이 아니다. 에도 막부의 영토 인식은 관찬 지도에 반영된다. 막부는 각 번이 작성한 각 지방의 회도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일본지도를 쇼호(正保)·겐로쿠·교호(享保)·덴포 기에 모두 4번에 걸쳐 작성했다. 이들 어느 지도에도 다케시마·마쓰시마는 그려져 있지 않다. 게다가 근대적인 관찬 지도로 저명한 이노 다다타카(伊能忠敬)의 「대일본연해여지전도(大日本沿海輿地全圖)」(1821)에도 다케시마·마쓰시마는 그려져 있지 않다.

또한 이노의 지도를 바탕으로 에도시대 말년에 간행된 관찬 지도 「관판실측일본지도(官板實測日本地圖)」는 다케시마의 기재 여부를 충분히 검토한 끝에 다케시마·마쓰시마를 그리지 않았다.<sup>75)</sup> 스기모토 후미코

(杉本史子)에 따르면, 막부 외국봉행(外國奉行)들은 다케시마를 지도에 기재할 것인지 검토했을 때 다케시마는 겐로쿠 연간에 장군님이 “조선으로 건네주셨다”고 이해하고 있었으나, 다케시마도 사할린 북반부와 함께 지도에 기입해놓고 훗날 무슨 일이 있을 때 구실(御辭柄)로 하자고 평의에서 결정했다.<sup>76)</sup> 그들은 영토 확장을 노릴 기회를 염두에 둔 것이다. 그러나 로주는 사할린 등은 인정했으나 다케시마는 인정하지 않았다. 그만큼 다케시마는 조선 영토임이 확실했던 것이다.

이리하여 「관판실측일본지도」에 다케시마·마쓰시마는 그려지지 않았다. 이 지도는 1867년에 열린 파리 만국박람회에 전시되었다. 동시에 이 지도는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열강국가 수뇌들에게 증여되었다.<sup>77)</sup> 따라서 이 지도는 에도 막부가 다케시마·마쓰시마에 영유 의사를 가지지 않았음을 세계 각국에 간접적으로 널리 알린 결과가 되었다. 또한 이 「관판실측일본지도」는 1870년(明治3)에 대학남교(大學南校)<sup>78)</sup>에서 출판되었으므로 일본 국내에서도 다케시마·마쓰시마는 일본 영토가 아님을 간접적으로 밝힌 결과가 되었다. 메이지 정부도 에도 시대의 다케시마·마쓰시마 인식을 이어받았던 것이다.

이상과 같이 외무성 『10포인트』가 인용한 전근대 자료들은 모두 독도를 일본 고유영토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 한편 『10포인트』의 주장을 예전의 「일본정부견해」와 비교하면 역사적인 인용 자료가 완전히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핵심이 되는 주장도 크게 변했다는 것이 주목된다. 『10포인트』에는 일본이 마쓰시마를 ‘경영’했다든지 ‘지배’했다는 등 예전의 핵심 주장이 없으며, 단지 마쓰시마에서 다케시마 도해에 부수된 어려움을 했다고 설명하고 있을 뿐이다. 이처럼 외무성의 주장이 약하게 된 것은

75) 池内敏, 앞의 책, 2016, 144쪽.

76) 杉本史子, 「地図・絵図の出版と政治文化の変容」, 『出版と流通』, 平凡社, 2016, 229쪽.

77) 위의 책, 244쪽.

78) 전신은 蕃書調所-洋書調所-開成所-開成學校, 후신은 東京大學.

외무성 주장의 기둥이었던 ‘마쓰시마 도해면허’설이 거의 부정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결국 『10포인트』는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로 하는 근거로써 전근대 자료를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으며, 일본 정부의 독도에 대한 고유영토론은 성립될 수 없다. 이에 관련해 이케우치 사토시는 일본 외무성이 17세기 중반에 독도에 대한 영유권이 확립되어 있었다고 하는 주장은 “오늘날의 역사학의 실증 수준에 비추어보면 완벽히 파탄하고 있다”<sup>79)</sup>라고 비판했는데 올바른 주장이다.

## 9. 맺음말

한·일 간에서 감정적인 고유영토론의 충돌이 피할 수 없게 된 상황에 비추어, 본고는 모호한 용어인 ‘고유영토’를 학문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즉, 근대국제법의 적용 이전에 특정국이 영유 의사를 가진 영역에 대해 타국이 그 영역의 영유를 다투지 않거나 혹은 다투어도 결과적으로 그 영역을 특정국의 영역으로 인정했다면 그 영역은 특정국의 고유영토다.

이 관점에서 양국의 독도에 대한 영유 의사를 보면, 일본은 1905년 이전에는 마쓰시마(독도)에 대해 영유 의사를 가지지 않았다. 일찍이 「일본정부견해」는 독도를 고유영토로 삼은 근거로써 12개 사료를 제시했으나, 이들은 ①오야 가문의 「청서」 등 영유권 주장과는 먼 사료, ②돗토리 번의 「회답서」나 번주의 「각」 등 독도가 오히려 일본 영토가 아님을 드러내는 사료, ③『인슈(온슈)시청합기』 등 잘못 해석한 사료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처럼 「일본정부견해」가 제시한 12개 사료들은 고유영토의 근거가 될 수 없다.

79) 池内敏, 「「竹島は日本固有の領土である」論」, 『歴史評論』 785号, 2015b, 91頁.

이 때문인지 일본정부 팸플릿 『10포인트』는 위의 사료를 하나도 인용하지 않았다. 이 사실은 「일본정부전해」가 제시한 사료들은 고유영토의 근거가 될 수 없음을 일본정부 스스로가 드러낸 것이 된다. 이 『10포인트』는 그런 자료 대신 「다케시마의 지도」<그림 3>라고 칭하는 지도와 「개정일본여지로정전도」 2개만을 게재했다. 그런데 후자의 삽화는 해적판이며, 그런 지도의 게재는 양식을 의심케 한다. 또한 전자의 「다케시마의 지도」는 돗토리번이 막부로 제출한 「다케시마도」<그림 4> 등의 밑그림 혹은 참고도에 불과하다. 일본의 마쓰시마 「경영」 상황을 제시하려면 공적인 지도 「고타니 회도」<그림 2>를 게재하는 것이 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가 그 지도를 피한 것은 이와 거의 동시에 제출된 「고타니 문서」의 존재 탓인 듯하다. 「고타니 문서」는 마쓰시마가 일본 영토 아님을 드러내고 있다.

게다가 설령 「고타니 회도」처럼 일본의 마쓰시마 「경영」 상황이 밝혀지더라도 공적인 지도 「다케시마도」<그림 4>에 볼 수 있듯이 마쓰시마가 조선쪽에 있다면 마쓰시마 「경영」은 침략행위로 된다. 또한 그런 경영이나 침략을 오랫동안 계속하여도 일본 영토가 되는 것도 아니다. 이는 울릉도쟁계(젠로쿠 다케시마 일건)의 결과 다케시마(울릉도)가 조선 영토로 결정한 사실에서 분명하다.

이상과 같이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의 근거로 될 수 있는 사료가 없는 반면, 일본 사료 중에는 오사카마치봉행소의 「다케시마 방각도」 등 마쓰시마가 조선 영토임을 드러내는 지도 등이 있는 것은 주목해야 할 일이다.

한편 조선 정부 측은 관찬서 『춘관지』, 『동국문헌비고』, 『만기요람(萬機要覽)』(1808) 등에서 독도를 우산도 이름으로 영유 의사를 밝혔다. 이 문헌들은 우산도는 일본이 말하는 마쓰시마임을 인식하고 영유 의사를 기록했다. 그러나 우산도는 문헌에 기록되었지만, 그 위치가 모호하게 되어 전설의 섬으로 되어버렸다. 조선 시대 말 울릉도 검찰사 이규원도,



울릉도 주민도 우산도를 찾지 못했던 것이다. 따라서 관찬서만으로는 정부가 조선 시대 말에도 독도에 대해 영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는 것은 성급하다. 실제 상황을 살펴보아야 한다. 이 시기 울릉도에 거주하는 어민들이 독자적으로 바위섬을 발견하고, 섬 이름을 돌섬 혹은 독섬이라고 부르고, 1894년경부터 때로는 이 섬에서 강치 잡이를 시작했다. 이 섬이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서 규정된 울도군 안에 石島라는 표기로 기재되었다. 대한제국이 독도에 대한 영유 의사를 밝힌 것이다. 그런데 독섬의 한자 표기가 石島에서 獨島로 변했으며, 1906년에는 울도 군수도 정부도 獨島 이름으로 이 섬에 대한 영유 의사를 밝혔다.

위와 같이 조선·대한제국 정부는 독도에 영유 의사를 가졌으나, 일본 정부는 17세기 후반에 마쓰시마를 반세기 가까이 활용했지만 영유 의사를 가지지 않았다. 따라서 한국만이 독도를 고유영토라고 말할 수 있다.

【참고문헌】

<한국어>

- 곽진오, 「일본의 독도 고유영토, 무주지선점, 그리고 국제법적주장의 허구와 한계」, 『일본문화학보』 62호, 2014.
- 김문식, 「『春官志』 筆写本の 原文比較」, 『星湖學報』 4호, 2007.
- 김수희, 「‘죽도의 날’ 제정 이후 일본의 독도 연구 동향」, 『독도연구』 10호, 2011.
- 김호동, 「일본의 독도 '고유영토설' 비판」, 『민족문화논총』 49호, 2011.
- 박병섭, 「17세기 일본인의 독도 어업과 영유권 문제」, 『獨島研究』 15호, 2013a.
- \_\_\_\_\_, 「근대기 독도의 영유권 문제」, 『독도 영유권 확립을 위한 연구 V』, 선인, 2013b.
- \_\_\_\_\_, 「안용복사건 이후의 독도 영유권 문제」, 『독도연구』 13호, 2012a.
- \_\_\_\_\_, 「일본의 새 논조와 일제 강점기의 독도 어업」, 『독도연구』 9호, 2010a.
- \_\_\_\_\_, 「일본정부의 독도 고유영토론에 관한 역사학적 검증」, 『동북아역사논총』 62호, 2018.
- 박인호, 「柳馨遠의 東國輿地志에 대한 一考察」, 『淸溪史學』 6, 1989.
- 송병기, 「獨島(竹島)問題 再檢討」, 『동북아역사논총』 18호, 2007.
- 송휘영, 「독도에 대한 일본의 「고유영토론」과 독도 인식」, 『한국동양정치사상연구』 제17권 2호, 2018.
- \_\_\_\_\_, 「『죽도문제 100문 100답』의 「죽도도해금지령」과 「태정관지령」 비판; 일본의 ‘고유영토론’은 성립하는가?」, 『독도연구』 16호, 2014.
- 서인원, 「1950년대 일본 고유영토설의 정치적 분쟁화 모순점에 대한 고찰」, 『영토해양연구』 15호, 2018.
- 양보경, 「磻溪柳馨遠의 地理思想」, 『문화역사지리』 제4호, 1992.
- 유미림, 「한국 문헌의 ‘울릉·우산’ 기술에 관한 고찰」, 『동양정치사상사』, 8권 1호, 2009.
- 유진호, 「한일회담이 열리기까지(상)」, 『사상계』 1966/2.
- 한국 외무부, 1977, 『왕복외교문서(1952-1976)』.

<한국어, 일본어 병기>

- 박병섭, 「독도 영유권에 대한 근대국제법의 적용 문제」, 『독도연구』 23호, 2017a.
- \_\_\_\_\_, 「안용복 사건에 대한 검증」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7.
- \_\_\_\_\_, 「池内敏의 『竹島-또 하나의 일·한 관계사』」, 『獨島研究』 20호, 2016.

- \_\_\_\_\_, 「시모조 마사오(下條正男)의 논설을 분석한다(2)」, 『독도연구』 7호, 2009a.  
 \_\_\_\_\_, 『한말 울릉도·독도 어업』,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9b.

<일본어>

- 堀和生, 「一九〇五年日本の竹島領土編入」, 『朝鮮史研究会論文集』 24号, 1987.  
 馬場章, 『地図と絵図の政治文化史』, 東京大学出版会, 2001.  
 名嘉憲夫, 『領土問題から「国境画定問題」へ』, 明石新書, 2013.  
 朴炳涉, 「江戸時代の竹島=独島での漁業と領有権問題」, 『北東アジア文化研究』 35号, 2012b.  
 \_\_\_\_\_, 「明治時代の鬱陵島漁業と竹島=独島問題(2)」, 『北東アジア文化研究』 32号, 2010b.  
 \_\_\_\_\_, 「池内敏著『竹島—もうひとつの日韓関係史』」, 『朝鮮史研究会会報』 209号, 2017b.  
 杉本史子, 「地図・絵図の出版と政治文化の変容」, 『出版と流通』, 平凡社, 2016.  
 森田芳夫, 「竹島領有をめぐる日韓両国の歴史上の見解」, 『外務省調査月報』 第2卷 5号, 1961.  
 三田清人, 「鳥取県立博物館所蔵 竹島(鬱陵島)・松島(竹島/独島)関係資料」, 『竹島問題に関する調査研究 最終報告書』, 島根県, 2007.  
 宋炳基, 『鬱陵島・独島(竹島)歴史研究』, 新幹社, 2009.  
 水路部, 『朝鮮水路誌』 제2개관, 1907.  
 \_\_\_\_\_, 『日本水路誌』 제6권, 1911.  
 奥原碧雲(福市), 『竹島及鬱陵島』, 報光社, 1907.  
 羽場久美子, 「尖閣・竹島をめぐる「固有の領土」論の危うさ」, 『世界』, 2013/2.  
 柳原正治, 『国際法』, 放送大学教育振興会, 2014.  
 日本外務省, 『竹島漁業の変遷』, 1953.  
 \_\_\_\_\_, 『日韓国交正常化交渉の記録』, XV竹島問題(公開文書番号 910, 発刊年度不明).  
 池内敏, 『日本人の朝鮮観はいかにして形成されたか』, 講談社, 2017b.  
 \_\_\_\_\_, 『竹島—もうひとつの日韓関係史』, 中公新書, 2016.  
 \_\_\_\_\_, 「「国境」未満」, 『日本史研究』 630号, 2015a.  
 \_\_\_\_\_, 「「竹島は日本固有の領土である」論」, 『歴史評論』 785号, 2015b.  
 \_\_\_\_\_, 『竹島問題とは何か』, 名古屋大学出版会, 2012.  
 \_\_\_\_\_, 「죽도(독도)의 활용실태와 영유권(竹島(獨島)의活用実態と領有権)」, 『獨

島研究』23호, 2017a.

川上健三, 『竹島の歴史地理学的研究』, 古今書院, 1966.

塚本孝, 「Q6「わが国固有の領土」とはどういうことか」, 『竹島問題100問100答』, WILL, 2014.

\_\_\_\_\_, 「竹島領有権をめぐる日韓両政府の見解」, 『レファレンス』2002/6.

\_\_\_\_\_, 「竹島関係旧鳥取藩文書および絵図」(上), (下), 『レファレンス』411, 412号, 1985.

\_\_\_\_\_, 「竹島領有権問題の経緯」, 『調査と情報』244号, 1994.

下條正男, 「実事求是、第20回～日韓のトゲ、竹島問題を考える」, 『竹島問題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2009年度, 2011.

\_\_\_\_\_, 「続・竹島問題考(下)」, 『現代コリア』, 1997.

\_\_\_\_\_, 「実事求是、第21回<朴炳渉氏の「下條正男の論説を分析する」(『独島研究』第4号)を駁す>」, 『竹島問題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平成21年度版、島根県総務部、2011.

\_\_\_\_\_, 「歴史的見地から見た竹島問題」, 『不条理とたたかう』2017.

\_\_\_\_\_, 「竹島問題と歴史認識問題」, 『海外事情』, 2014/1.

\_\_\_\_\_, 「竹島問題で跋扈する日本人リベラル学者たち」, 『別冊正論』31号, 2018.

\_\_\_\_\_, 「最終報告にあたって」, 『竹島問題に関する調査研究最終報告書』, 2007.

<자료>

『邊例集要』, 『成宗實錄』, 『世宗實錄』, 『新高行動日誌』, 『元祿九丙子年朝鮮舟着岸一卷之覺書』, 『磯竹島覺書』, 『朝鮮竹嶋渡航始末記』, 『竹嶋渡海一件記』, 『竹嶋之書附』

<Abstract>

## **Dokdo / Takeshima Inherent Territory Theory in Korea and Japan**

**Park, Byoung-Sup**

The term "inherent territory" is a dangerous political term. Moreover, in the current situation where the two countries are sharply confronting on Dokdo, there is a need to academically define the term ambiguous inherent territory and to restrain its use. This paper analyzes the usage and meaning of the term "inherent territory" and attempts to define it. It analyzes the claims of the territory of Korea and Japan according to their definition.

The reason why Korea made Dokdo Island its own territory was presented in Foreign Ministry pamphlet 'Korea's beautiful island, Dokdo', and "The Korean Government's view" to the Japanese government in the 1950s. If these are verified, it is not enough to justify inherent territory before the 17th century because it is vague the location of Usando island, or to confuse Usando with Ulleungdo in the Choseon History Book of [Taejong Silok]. The historical materials to be assessed as the basis of inherent territory is the [Chungwan-ji] and [Dongguk-munheon-bigo] published by government level in 18th century. These materials accept the testimony of Ahn Yong-bok, who visited the Usando island at the end of the 17th century and insisted that the island of Usando is Japan's Matsushima, and revealed his will for the territory right on Usando island. The legitimacy of Ahn Yong-bok's testimony is confirmed in the Official Document, [Genroku Memorandum]

of Japan.

However, since the exact location of Usando Island was not recorded in the government publication, at the end of the 19th century, Ulleungdo prosecutor and residents did not know the location of Usando Island, and Usando Island became a legendary island. On the other hand, Jeolla province fishermen who entered Ulleungdo in the middle of the 19th century found Dokdo Island, called it 'Dolseom Island' or 'Dokseom Island', and occasionally hunted sea lions there. This island was recorded as 'Seokdo(Rock island)' in the Korean imperial edict no. 41 of 1900. This "Seokdo" sign changed to "Dokdo," but the Korean empire's "Seokdo" or "Dokdo" declared intention to enter the country as an important basis for its own territory.

On the other hand, the basis for claiming Takeshima (Dokdo) as Japanese inherent territory is not presented in the [10 points of Takeshima Issue] in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pamphlet, and was presented only in the "Japanese Government View" sent to the Korean government in 1953-1962. At this time, the "Japanese Government View" presented 12 documents on the basis of its own territory, but none of them reveal that Japan has a doctrine of territory on Matsushima (Dokdo). This can be inferred from the fact that the previou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brochure did not cite any of the twelve materials. In the end, before 1905, only the Chosun and Korean Empire governments were willing to treat Dokdo as territory, so Dokdo can be claimed as Korea's inherent territory.

**Key words:** Ulleung Island, Seokdo, Dolseom, Dokseom, Takeshima,  
Matsushima

이 논문은 2018년 11월 28일에 투고 완료되어,  
2018년 12월 1일부터 12월 13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8년 12월 15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